

2018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백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18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 여러분께



2015년 성공적인 ECCK White Paper (백서) 첫 출간에 이어, 올해 역시 2018년 동안 회원사들로부터 제기된 산업 및 규제 이슈들을 정리한 백서를 네번째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ECCK는 국내 유럽기업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과적으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더 나은 한국의 기업환경조성에 일조하고자 산업별 위원회를 통해 이슈와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본 백서는 오로지 한국과 유럽 기업 상호간 우호증진과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위해, 건설적이고 열린 대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아울러, 회원사들에게는 한국의 전반적인 규제환경은 물론 산업별로 제기된 문제점과 전망을 고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유럽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돈독한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상반기에는 EU국가의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기준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6.3% 증가한 46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한-유럽관계의 괄목한한 한 발전을 고려할 때, 한국시장의 동향, 규제환경,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하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ECCK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의 최일선에서 회원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ECCK는 산업별 규제와 정책이슈를 다루는 더욱 발전된 백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하고자 합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의견과 비판은 저희에게 큰 도움과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간되는 백서를 통해 활발한 정보의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백서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회원사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Dimitris Psillakis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18

인사말	p 2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p 5
2018 백서 개요	p 12
산업별 위원회 보고서	
자동차	p 19
주류	p 28
화학	p 32
화장품	p 38
패션 및 유통	p 42
식품	p 47
헬스케어	p 52
보험	p 64
지식재산권	p 72
주방 및 소형가전	p 82
물류 및 운송	p 87
조선 및 해양	p 91
ECCK 워킹그룹 (ECCK Working Group)	
그린워킹그룹	p 94
조세워킹그룹	p 97
부록	p 102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소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의 협회로서, 201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당시 지식경제부)의 정식인가를 거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유럽연합대표부를 비롯하여 유럽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설립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기관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것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대부분은 유럽계 기업들이지만,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국적의 기업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또한 각국의 상공회의소와 대사관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는 운영과 방향에 대하여 정보와 자문을 제공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은 사무국을 통해 집행됩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유럽기업들과 한국정부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향합니다. 또한 유럽기업들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이념 및 활동목적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기업 및 한국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정하고 열린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유럽의 목소리를 대표하고자, 유럽연합대표부, 유럽 각국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그리스)

회장
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그리스 국적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Dimitris Psillakis) 회장은, 2015년 9월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및 사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실라키스 회장은 1992년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스를 시작으로 세일즈 및 마케팅 전문가로 다임러 그룹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로 오기 전까지, 라틴 아메리카 승용 부문 대표이사로 활동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안드레 슈미트갈 (독일)

부회장
현 이케아 코리아
대표

안드레 슈미트갈 (André Schmidtgal)은 독일 출신으로 2013년부터 이케아 코리아의 리테일 매니저 및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1993년 이케아 함부르크에서 리빙룸 샵피어로 경력을 시작한 안드레 부회장은 이후 스토어 매니저와 리테일 부매니저를 포함한 다양한 포지션을 맡아왔습니다. 이케아 코리아 대표를 맡기 전, 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케아 핀란드에서 리테일 매니저 및 대표이사로 활동 하였습니다.



얀 벵가드 (덴마크)

부회장
현 올리콘 발저스 코리아
대표이사

덴마크 출신의 얀 벵가드 (Jan Benggaard) 부회장은 2016년 11월부터 올리콘 발저스 코리아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2002년부터 부산에 위치한 바르질 라마린시스템즈 코리아 (Wärtsilä Marine Systems: 구 L-3 마린시스템즈)에서 사장으로 지냈던 얀 부회장은, 1998년 부산으로 오기 전까지 미국과 유럽의 사업을 지휘하는 프로젝트 엔지니어와 세일즈 매니저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얀 부회장은 2005년부터 부산국제외국인학교의 감사를, 2015년부터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아왔습니다.



마우리치오 코라사 (멕시코)

부회장
현 AXA 손해보험
재무부사장

마우리치오 코라사 (Mauricio Coarasa)는 멕시코 출신이며 AXA 손해보험 코리아에서 2005년부터 재무이사 및 Corporate Secretariat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그는 AXA 멕시코 전략투자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보험 산업에서 경력을 쌓기 전, 마우리치오 부회장은 멕시코 정부에서 금융감독(financial regulator)으로,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그리고 자사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마우리치오 부회장은 한국에 오고 난 직후에 ECCK 보험 위원회에 가입했으며, 작년부터 본 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어크 루카트 (독일)

이사
현 쉐커코리아
대표

독일 출신인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는 2015년부터 쉐커 코리아의 대표이사과 CEO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Schenker & Co. GmbH in Frankfurt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인디아의 DB 쉐커에서 다수의 관리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디어크 이사는 일본에 위치한 세이노쉐커에서 General Manager을 맡았으며, European Business Council의 물류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는 계약 물류, 항공 & 해상 물류, 전시사업과 프로젝트를 포함한 물류 산업에 20년이 넘는 방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어크 이사는 2015년 1월에 ECCK에 가입했습니다.



필립 후버트 (프랑스)

이사
현 베올리아 코리아
재무부사장

필립 후버트 (Philippe Hubert)는 프랑스 출신이며 2016년 3월부터 베올리아 코리아 재무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5년동안, 그는 베올리아 본사에서 다양한 직무를 맡았으며, Water France activities에서 재무부사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베올리아에서 일하기 전, 필립 이사는 토탈 업스트림에서 일하며 여러 국가에서 활동했습니다.



박현남 (대한민국)

이사
현 도이치 은행 서울지점
대표 및 공동 지점장

박현남 (Hyun-Nam Park)은 한국 출신으로 현 도이치 은행 서울지점 대표 및 공동 지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마켓팅을 이끌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금융 업계의 다양한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재한 외국인 은행가 그룹의 부회장이며, 금융위원회 내 한국 금융 허브 위원회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남경희 (대한민국)

감사
현 디아지오 코리아
재무 이사

남경희 엘리자베스 (Elizabeth Kyunghee Nam)는 한국 출신으로 현 디아지오 코리아 재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재무 및 관리 전문가로서 18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LG텔레콤, Shepard, Schwartz & Harris, 및 필리핀 에어라인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카이야네스 베그너 (독일)

이사
현 김앤장
외국변호사

카이야네스 베그너 (Kay-Jannes Wegner)는 독일 시민권자이며 독일 및 영국 변호사입니다. 그는 2011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선임 변호사로 일하며, 주로 유럽국 고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카이야네스 이사는 2001년부터 2007까지 런던에서, 2007년부터 2011까지 싱가포르의 다국적 로펌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총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총장은 2013년 6월 1일부로 현직에 취임 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독일 제약회사인 바이엘 (Bayer AG)에서 근무하였으며, 일본지사에서 회계부서장을 한국지사에서 재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보선**부총장****스벤-에릭 바텐버그**

이사, 법률&국제협력

하원나래

부장, 조선&해양/물류&운송 위원회

박안숙

이사, 화장품/헬스케어 위원회

임창훈

부장, 자동차 위원회

서효경

이사, 식품/주류/주방및소형가전 위원회

김정현

과장, 홍보&커뮤니케이션

조소현

대리, 홍보&커뮤니케이션

심혜원

대리,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

조혜은

대리, 멤버십 관리

이현성

과장, 회계 & 인사관리

주한유럽상공회의소**사업소개****위원회 및 포럼**

산업별 위원회와 포럼은 상공회의소 활동의 핵심입니다. 위원회와 포럼을 통해 회원사들에게는 현재 해당산업의 규제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무역/사업 이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 제기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규제기관과 관련된 특정산업의 이슈들을 주로 다루는 반면, 포럼에서는 인사관리, 사회공헌활동 등 포괄적인 주제들을 논의합니다

행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비즈니스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동시에 회원들간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산업 및 경제계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한 소통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출판물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정보교류의 중심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여, 회원사들에게 시장동향과 규제이슈, 주요 사회적 트렌드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또는 특정한 산업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기 간행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명부
- ECCK Connect (계간지)
- 뉴스레터
- Business Confidence Survey (기업환경조사)

EU 프로그램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왔으며, 일부 홍보 및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14년에는 한국에 진출하려는 EU국가 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EU Gatewa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장조사보고서를 업데이트하였으며, 저희 상공회의소는 EBO Worldwide Network ASBL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 백서 개요

개요

ECCK 백서는 2015년 처음 출간된 이래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국내 유럽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백서의 주요 목적은 한국의 전반적 규제환경을 조망하는 동시에, 국내 유럽 기업들이 선별한 산업별 특정 과제와 이에 대한 해결 전망을 한국정부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유럽자유무역연합사무국 (Secretariat of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s²),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s³) 및 EU와 EFTA 정부 그리고 이외 이해 집단에게도 국내 비즈니스 환경 업데이트를 유지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본 백서는 현 규제에 대하여 한국 정부 및 각 부처에 전달하는 123개의 세부 건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CCK는 350개의 회원사의 의견에 의거하였고, 특히 ECCK의 산업 위원회 회원이자 실무그룹(working group)인 110개의 유럽기업의 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하였다.

해당 백서는 2018년에 제기된 산업별 특정과제와 이에 따른 권장사항에 대한 연례 개요이다. 이러한 과제 및 건의사항들은 ECCK가 서신 또는 회의를 통하여 한국정부 및 관련 부처에게 꾸준히 전달하였던 내용들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비즈니스 환경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고, ECCK는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한국정부와 유럽기업들 간의 더욱 효과적인 소통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아직 존재한다.

ECCK는 유럽의 비즈니스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여러 방면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유럽 기업들과 유럽 경제 공동체 등 기타 고위급 회담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보다 더욱 더 건설적인 회담을 가지고 한-유럽 간의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표준과 모범 기준 (best practice)이 일치하도록 견해 및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현 글로벌 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분쟁에 더불어 미국의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같은 보호주의 전략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접근을 포용하는 모범적인 롤모델(role model)로서 확신과 약속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국의 GDP는 전세계 11위를 기록하며, 세계 수출랭킹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지표는 한국이 국제 무역정책 무대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위치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유입과 효율적 이용

EU는 한국 유입 FDI의 32%라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26%, 미국:19%) 2017년 EU기업의 FDI는 65억 달러로, 38억 달러에 달했던 2016년 대비 68%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FDI 제한 지수 (FDI Restrictiveness Index)는 67 개국 중 51위로, 한국의 FDI 유치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 많은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추가 개방을 실행하고 외국회사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기업 및 제품에 대한 한국 시장에 대한 자율적 출입이 보장되도록 규정을 검토하고, 국제 규범을 도입하고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현 규제에 대한 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CCK 회원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특정국가의 투자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관련 규제들은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정보가 교환이 되지 않은 상태로 너무 자주 변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새로운 정책이 원하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FDI를 유치할 절호의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 확장을 위한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들:

- 일관성
- 예측 가능성
- 신뢰성
- 투명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업 비즈니스 환경개선에 도달한다면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한국의 미래 경제 발전은 기업양성과 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ECCK는 회원사들과 한국 정부 및 부처들을 위해 효율적인 소통창구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CCK는 새로운 법률 또는 상정된 법률 개정안을 업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다양한 산업위원회와 실무그룹 운영을 통하여 당국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접근 방식은 유럽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한국의 사업 성장을 지원할 것이며, 한국에 대한 FDI 또한 증가할 것이다.

한-EU FTA 및 한-EFTA FTA의 현대화

ECCK는 한-EU FTA (2009년 10월 체결, 2011년 7월 잠정발효) 및 한-EFTA FTA (2005년 12월 체결, 2006년 9월 발효)의 현대화를 위해 관련 정부들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

FTA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래,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양측의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4차 산업 혁명 등장에 상응하는 새로운 분야의 도전과 협력의 필요성도 예상된다. 이 말인 즉슨, 체결당시 'state-of-the-art' 였던 FTA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 FTA의 몇몇 요인은 본 목적과 상이하게 오히려 무역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한국과 유럽의 수준 높은 무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FTA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개선을 통해 양측의 경제, 무역 협력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물론 FTA의 갱신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재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FTA의 현대화가 진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아래와 같은 FTA요건들의 현대화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EU FTA 내 트럭 트랙터 포함 및 적용
- 항공기 수리 및 한국 시장 재진출의 의무로부터 면제
- 간접 선적이 적용되는 물품은 한-EU FTA의 혜택 적용
- 동등한 절차와 관련된 규칙 및 규정은 계약 파트너가 동일한 방법으로 이해 및 적용

공정 경쟁 강화

ECCK 백서는 산업별 특정과제 및 관련 건의사항만 다루고 있으며 각 회원사의 개별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ECCK는 부적절한 재무 및 기타 거래가 일부 유럽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외국인투자유무부즈만에게 전달되었다.

공정한 경쟁은 다양한 방향에서 보여지고 평가될 수 있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주도 된다. 한국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하며, 특히 당국이 주도하는 시책과 지원을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많이 필요한 현실이다.

- 2016년 한국정부는 혁신 의약품에 대한 가격 정책을 시작했다. 해당 정책은 혁신적인 의약품을 기리기 위함으로 주로 국내 제약 회사들에게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반면 유럽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은 이론상으로도 법령에 정의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유럽 헬스케어 회사들의 혁신 의약품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도입하여 국내외 기업간의 공정경쟁 강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해양 및 조선 분야의 입찰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들은 한국 기업만이 만족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표준 구매 계약을 도입하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 국내 조선해양 부문의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2018년 4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의 혜택은 순수한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한국기업만이 아닌 외국기업 또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내외 해운 회사가 협력과 공존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CCK는 일부 유럽 기업에 대한 감사 또는 기타 조사와 같은 한국 정부기관의 가속화된 활동을 관측할 수 있었다. 또한 ECCK는 몇몇 다국적 기업들 상대로 재정적 처벌 등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전체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CCK는 정부가 한국 및 외국기업 모두를 위한 공정한 경쟁 절차를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결론

유럽은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파트너십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유럽 기업들은 현지 비즈니스를 확장하며 더 많은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 환경 발전을 위하여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ECCK를 통하여 유럽기업들과 한국정부간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정책 수립 시 산업측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국제 규칙 및 규제에 대한 지식 공유를 가능케 한다.

백서에 제시된 이슈들은 모든 것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분야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졌거나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이슈는 당국과 ECCK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집중될 필요가 있다.

ECCK는 본 백서가 한국 정부와의 향후 논의를 위한 탄탄한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의 추가 경제 발전은 유럽의 비즈니스 공동체가 필수적인 부분이자 협력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모두의 과제이다.

산업별 위원회 보고서

임창훈
부장,
자동차 위원회

자동차 위원회

개요

2017년 국내 승용차 시장의 수입자동차 점유율은 약 13%를 기록하였다. 전체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유럽 자동차 제작사는 7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상용차 시장의 경우 2017년 유럽 상용자동차 제작사의 국내 덤프트럭 및 트랙터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71%(덤프트럭)와 75%(트랙터)를 차지하며 유럽 제작사의 강세를 유지하였다. 카고트럭 시장에 있어서는 8.2%(중형)와 26.4%(대형)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는데, 전년 점유율 (중형: 4.1%, 대형: 22.5%)에 대비하여 약진을 나타냈다. 한편, 국내 전체 덤프트럭 판매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내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판매 감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타이어 시장에 있어서는 국산 타이어제작사가 여전히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유럽 및 수입 타이어 제작사는 주로 프리미엄 차량에 적용되는 고성능 타이어로서 차별성을 갖고 국내 타이어 시장의 다양성을 확대시켜가고 있다.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제에 있어서는 2018년 1월 10일부터 자동차 부품자기인증 적용 대상 품목이 8개 추가되어 확대 시행되었다. 해당 부품은 국내 안전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판매되어야 한다. 또한 대형차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의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어, 경형 승합자동차 및 일부 예외 차종을 제외한 모든 승합자동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자동차 환경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환경 관련 정책이 시행, 계획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수송 분야에서의 저감을 위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대형차 온실가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승용차 분야에서도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대한 설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등급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자동차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자동차 배출 등급은 향후 운행제한제도(LEZ)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동차 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규들도 새롭게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7년도부터 시행된 제작자 자료 제출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제작자는 무상 수리 정보 및 품질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 현장 품질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교환환불제도가 2019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타이어 관련 규제에 있어서는 타이어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상향이 준비되고 있으며, 타이어 소음 발생 규제를 위한 타이어 소음 표시제도 시행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중대형 트럭버스용 타이어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도입도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유럽 자동차 업계는 한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한국과 유럽 간의 교역 확대와 국내 자동차 시장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한국에

서의 투자 확대, 고용 확대 등을 이루어 가고 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의 역할이 커진 만큼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EU FTA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안전 기준 항목들이 국제 기준과 조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통상 장벽 제거와 FTA의 실질적인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 및 적용 과정에 있어서는 산업계에서 느껴지는 장애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여 이러한 장애 요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제도,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친환경차 협력금제 등의 다양한 제도가 시행,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각 제도에서의 중복 규제 여부 및 제도의 효과성,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동차제작사에서 보다 명확한 규제 준수 및 제도 시행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필수 요소인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제작사에서의 보급 노력과 더불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의 사회적, 국가적 지원 및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의 자동차 시장에서의 사업 환경은 자동차 안전 부분 관리 강화와 환경 보호,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각종 정책 및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 자동차 업계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해외 제작사가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책 적용에서 있어서 국내 제작사와 다른 여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유럽 자동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각종 정책들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보다 나은 통상 환경 조성과 국내 자동차 시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이슈

승용차 위원회 안전

1. 충돌안전기준 개정안 시행 시점

지난 2018년 4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새로운 충돌안전기준인 부분정면충돌 및 기동측면충돌 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다. 본 충돌안전 개정 사항은 EU에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기준이나, 국내에서의 시행 시점이 EU의 시행 시점과 달라, 유럽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새로운 충돌안전 기준의 적용 시점이 신규차의 경우 2020년 9월, 기존차의 경우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나, EU의 경우 신규차는 2022년 이후, 기존차는 2024년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의사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충돌안전기준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EU와 동일한 시점으로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EV/PHEV용 구동축전지에 대한 시험 기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별표1의 48.7.1, 48.7.2, 48.7.7 에서는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시험기준 - 낙하시험, 액중투입 안전시험, 연소 안전시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국가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 한국만의 특수한 규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제작사에서는 이러한 안전 기준 설정이 실제 자동차 안전 성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히, 연소 안전시험의 경우 시험 온도와 같은 시험 조건이 다른 국가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조건과 다르며 실제 현장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건의사항

구동축전지에 대한 일부 시험 기준이 한국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한 규정임을 고려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3과,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별표1-48.7.1, 48.7.2, 48.7.7에서의 구동축전지에 대한 낙하시험, 액중투입 안전시험, 연소 안전시험 기준의 삭제에 대한 검토를 요망한다.

3. 자동차자기인증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인정 범위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2, ⑤에서는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해석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자동차제작자의 부품자기인증 과정에 추가적인 업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품자기인증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안전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불량 부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가 공급하는 자동차부품의 경우는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 운행에서의 안전 성능을 충족하는 부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2, ⑤에서의 부품자기인증의 인정 범위는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 및 그와 동일한 사양의 자동차부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2, ⑤에서의 자동차자기인증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인정 범위는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 및 그와 동일한 사양의 자동차부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필요하다.

4. 한-EU FTA에 따른 UNECE 형식 승인서 인정

한-EU FTA 부속서 2-다의 8조에서는 한국의 기술규정에 대한 UNECE 형식 승인서 인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증 과정에서 UNECE 형식 승

인서는 제한된 범위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의 기술규정을 만족하는 자료로서 완벽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건의사항

한-EU FTA 부속서 2-다의 8조에 따라, UNECE 형식 승인서가 한국 기술규정 만족에 대한 자료로서 실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길 요망한다.

5.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기준

현재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목표 기준이 2020년도까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목표 기준은 자동차제작사의 연비 기술이나 저공해자동차 구성 비중 등을 볼 때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 특별히 평균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가 필요한 조건이나, 전기차 판매 확대는 자동차제작사에서의 자체적인 노력 이외에 전기차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에코이노베이션 (Eco Innovation)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목표 달성에 있어서 자동차제작사에게 보다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의사항

승용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목표 달성에 있어서, 자동차제작사에게 보다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대 마련이 필요하다.

6. 배출가스, 연비, 소음측정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 시험기관 범위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및 연비, 소음 측정에 사용되는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시험 시설 확인을 받은 제작사의 시험시설 및 국내 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그 인정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형식 승인 기관 (TUV, VCA, RDW 등) 은 유럽의 형식 승인을 대행하여 그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럽의 형식 승인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 시설 확인의 절차 없이도 시험성적서에 대한 인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의사항

유럽의 형식 승인 기관 (TUV, VCA, RDW 등)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 시설 확인 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 시 해당 시험성적서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7. 환경성보장제도 운영에서의 국제 표준 절차 인정

현재 국내 환경성보장제도운영 절차에 따르면, 별도로 마련된 사후관리 및 운영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IMDS 및 ISO, REACH 절차가 같은 국제 표준 제도 인정에 한계가 있다. IMDS 및 ISO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절차이므

로, 환경성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의사항

환경성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 국제 표준 제도인 IMDS, ISO에 대한 유연성 있는 인정이 필요하다.

8. 배출가스관련부품의 구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지정되어 있으나, 부품 대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변경인증/보고 절차를 위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특별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비교1에서와 같이 ‘기능이 동일하거나 기술진보로 변경된 기능이 유사한 부품’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제작사 입장에서 변경인증/보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배출가스관련부품이 보다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변경인증/보고 대상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며 철저한 인증/보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0의 비교1을 삭제하고, 변경인증 및 보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 보다 명확하게 지정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9.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성적서 기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9조 ①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 신고를 위한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동일한 시험성적서로 배출가스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는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90일이 경과한 시험성적서라 하더라도 그 시험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를 위한 시험성적서의 90일 유효기간 설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건의사항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9조 ①에 규정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를 위한 시험성적서의 90일 유효기간 규정에 대한 삭제가 요망된다.

10. 고객 인도 전 차량의 제작 결함 시정 및 고지 의무

제작 결함 시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내제작자는 출고 사업소로부터의 차량 고객 인도 여부를 기준으로 제작 결함 시정 고지를 하고 있다. 반면, 수입제작자의 경우에는 차량의 통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상 차량이 고객 인도 전이라 하더라도 차량이 통관된 경우에는 제작 결함 고지 절차인 자동차 소유

자에 대한 통지서 발송 및 신문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 결함 내용을 알린다는 제작 결함 고지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제 차량 소유자가 없음에도 우편 통지를 하는 등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한다.

건의사항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작결함 시정 대상 차량을 기존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서 ‘등록된 자동차’로 개정하여,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신문 공고 등의 절차가 실제 자동차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11. 제작결함 시정 계획에 대한 보고 절차

자동차제작자가 제작결함 시정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 및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모두 방문하여 시정 계획에 대해 대면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작결함 시정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이를 통해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고 있기에 대면 보고는 추가적인 업무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보고 창구가 국토교통부 및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 부분에서도 중복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의사항

제작결함 시정 계획에 대한 보고는 시스템을 통한 보고로만 완료될 수 있도록 요망한다. 아울러, 시정 계획에 대한 보고 창구의 일원화를 요망한다. (국토교통부 또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상용차 위원회 안건

12.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한-EU FTA 협상 시,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2-다-1에 있는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표기 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제품이 FTA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좌석안전띠 부착 기준의 경우, EU의 안전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동등성 규정에 의한 한국 안전 기준 만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건의사항

한-EU FTA 협정문의 해당조항의 수정을 통하여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가 한-EU FTA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

13. 자동차 너비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자동차의 너비가 2.5m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안전기준 국제화 연구 진행을 통해, 자동차의 너비 기준을 현행 2.5m로 유지하되, 측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차체의 너비가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이러한 개정을 통한 완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도로 폭 규제치의 경우, 유럽과 국내 기준이 유사하나 유럽의 자동차 너비 규제치는 2.55m로 국내 규정보다 넓은 것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2.55m 차량 너비 허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 차종에 대한 2.55m 너비 허용이 어려운 경우, 화물/특수자동차 및 2층 승합자동차, 3층 승합자동차에 한정하여 2.55m 너비 기준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으로 보여진다.

건의사항

한국의 자동차 너비에 대한 허용 기준을 2.55m로 개정할 것을 요망한다.

14.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의무 장착 대상 차종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2, 제15조의 3에서는 승합자동차 및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의무 장착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종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외 차종 중 EU에서 규정하는 제외 차종과 일부 차이가 있다. EU에서는 오프로드용 자동차를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건의사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2, 제15조의 3에서의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의무 장착 대상 차종을 EU 규정과 동일하게 오프로드용 차량은 제외되도록 요청한다.

15. 자동차자기인증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인정 범위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2, ⑤에서는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해석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자동차제작자의 부품자기인증 과정에 추가적인 업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품자기인증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안전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불량 부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가 공급하는 자동차부품의 경우는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 운행에서의 안전 성능을 충족하는 부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2, ⑤에서의 부품자기인증의 인정 범위는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 및 그와 동일한 사양의 자동차부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2, ⑤에서의 자동차자기인증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인정 범위는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 및 그와 동일한 사양의 자동차부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필요하다.

16. 대형차 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

현재 환경부에서는 대형차 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HES 프로그램 사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유럽 자동차제작사의 경우 유럽에서 사용하는 VECTO 프로그램에 따라 온실가스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프로그램의 산출 방식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유럽 자동차제작사 입장에서는 HES와 VECTO의 시스템 차이로 인해 동일 모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출될 수 있고, 이는 자동차제작사에서의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자동차제작사에 대해서는 VECTO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의사항

대형차 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으로 유럽 자동차제작사에 대해서는 VECTO 프로그램의 사용을 인정해 줄 것을 요망한다.

타이어 위원회 안건

17. E-mark 부착 타이어에 대한 안전확인신고 면제 절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4조에 따르면, UNECE R-30/54를 만족하고 E-Mark를 각인한 EU 원산지 타이어는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의 부속서 2-다-3의 표1에서도 UNECE R-30/54를 만족하는 타이어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안전확인신고 면제를 위한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수반, 시간 소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이어제작사는 오히려 면제보다 일반 안전확인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보고있으며 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EU FTA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유럽 타이어제작자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로 여겨지고 있다.

건의사항

유럽 타이어제작자가 한-EU FTA에 의해 실질적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EU원산지 타이어에 대한 안전확인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요망한다.

18. 해외 원산지 타이어에 대한 E-Mark 인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4조에 따르면, UNECE R-30/54를 만족하고 E-Mark를 각인한 EU 원산지 타이어는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제 대상 범위를 EU원산지 타이어에만 한정하여, EU 이외 국가의 원산지 타이어에 대해서는 안전확인신고 면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EU 이외 국가의 원산지 타이어라 하더라도 E-Mark가 부여된 타이어는 EU 국가에서 생산된 타이어와 동등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E-Mark 부착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면제의 인정 범위를 EU 이외 국가 원산지 타이어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의사항

안전확인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E-Mark 인정 범위를 EU 이외 국가 원산지 타이어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망한다.

개요

주류산업은 제조와 유통을 면허로 규제하는 국세청과, 주류표시제도와 식품검사를 규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광고 규제와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한국의 주류관련 법규 및 규정은 제조 및 판매는 물론 기업의 마케팅, 홍보활동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최근 한국에서 주세제도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주세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증가세와 종량세 체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개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합리적인 주세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계의 고민이 있어왔다. 그 중 맥주에 대한 종량세 도입의 검토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내년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주세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일부 주류(과실주, 증류식소주, 브랜드,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일부(대형매장용·가정용을 가정용으로 통합) 폐지하여 주류 제조자와 유통업자의 상표관리와 재고관리 부담 다소 완화되었으나 아직 남아있는 표시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요청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주요 주류 수입량은 379백만리터 (성인 1인당 9리터)로 2016년에 비해 38.1%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금액 증가율은 8%로 상대적으로 수입단가가 낮은 주류의 수입량의 증가가 주요 한 것을 알 수 있다.

맥주 수입량은 331백만리터 (성인 1인당 7.8리터)로 전년 대비 50.2%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매년 20%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폭이었던 2015년의 43%를 월등히 뛰어넘는 증가율이다. 최대 수입 대상국은 일본, 중국, 벨기에 순이다. 유럽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전체 맥주 수입량의 47.4% (157백만리터)에 해당하며, 벨기에와 (전년대비 92% 증가) 프랑스 맥주의(전년대비 127.4% 증가) 성장세가 눈에 띈다. 와인 수입량은 28백만리터 (성인 1인당 670ml)로 전년 대비 8.1% 감소하였는데 화이트 와인 수입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최대 수입 대상국은 (수입량) 칠레, 스페인, 이탈리아 순이고, (수입금액) 프랑스, 칠레, 미국 순이다. 위스키 수입량은 18백만리터 (성인 1인당 428ml)로 전년 대비 14.3% 감소하였다.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소폭 증가 후 2017년 다시 감소하고 있다. 최대 수입 대상국은 영국, 미국, 캐나다 순이다.

수입맥주 수입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강을 생각해 가볍게 술을 마시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다양한 맛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의 성향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입맥주의 주요 판매처는 마트와 편의점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일과 후 집에서 맥주를 즐기는 일명 혼술족이 늘어난 사회적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 주류 회사들도 다양한 맥주를 수입하며 수입맥주 시장성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주요이슈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

1. 주류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

국세청은 주류 경품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2017년 7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며 기업의 판촉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내용을 주류 수입 기업들이 실제 적용시켜본 결과, 그 범위는 역으로 큰 폭으로 축소되고 판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기업의 판촉기회가 오히려 위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했다. 경품 고시가 폐지되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류 고시에 이관되어 남아있는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는 이 두가지 목적 모두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남아있다.

(i) 직전연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 이하

여러 주종을 다루는 기업 혹은 그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주종을 수입하려고 하는 기업, 기존에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기업 등에서 제품을 시장에 소개할 때 최초 2-3년 동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판촉 행사 및 홍보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데, 총한도액 기준을 직전연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로 제한 할 경우 직전연도 실적이 좋지 않았거나 해당 주종을 수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 그 시장진입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이 힘든 상황을 초래한다.

(ii) 주류 거래금액의 5% 초과 소비자 경품 금지 (다만, 보냉가방 예외)

비현실적 경품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없으며, 불공정한 예외 조항으로 판촉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일하게 예외 된 보냉가방의 경우 맥주 이외의 주류에는 크게 이목을 끌지 못한다. 그리고 제작 비용이 상당하여 소규모로 제작할 경우 단가 조정의 한계로 중소 규모 수입 기업에서는 제작이 힘들다. 이는 자율 경쟁하는 시장에서 판촉 활동을 제한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iii) 소비자 혜택 축소

건강을 생각해 가볍게 술을 마시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다양한 맛의 제품을 찾는 것이 현재 주류 소비의 트렌드이다. 다양한 경품의 제공이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 및 선택의 다양성을 가져다줄 수 있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건의사항

'소비자 경품의 범위를 완화하여 기업의 판촉기회 확대'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 완화를 요청한다. 총액 한도에서 주종별 조건과 주세 과세표

1. 와인(적, 백, 발포성), 맥주, 위스키, 보드카, 진, 럼 - 무역통계

2. 19세 이상 성인 약 41,000,000명

준의 기준을 없애고, 기업의 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 한도로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경품 가액은 주류 거래금액의 최소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판촉제품의 다양성을 보장받기를 희망한다. 국내외 기업들이 차별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는 주어진 다양성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바란다.

2. 주류 경품제공 내용 디지털 마케팅 허용

1-(1)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주세법에서 주류 경품을 허용하며 이에 따른 가액과 총액한도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내 별표1 광고의 기준, 7번)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경품 제공 등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판촉 행위는 일정범위 안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관련내용을 홍보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의 모순이며 기업의 자율활동을 과하게 규제하는 제도로 사료된다.

건의사항

타법에서 허용하는 주류의 판촉행위를 홍보하여 소비자의 위치나 시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류의 경품제공 내용을 홍보 및 마케팅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희망한다.

주류 용도구분표시제 개선

2002년부터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시행해 온 용도구분 표시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보편화와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업소 매출액이 투명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효율적인 규제라 볼 수 있다. 오히려, 라벨 제조 및 변경 작업 등 생산비와 물류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고시개정으로 용도구분 표시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아직 남아 있는 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3.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가 부착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완전 폐지

대표적 수입 주류인 위스키, 브랜드는 ‘업소용’과 ‘가정용’ 및 ‘주세면세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상표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위스키의 경우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RFID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유통 내역이 국제청 주류유통정보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되어 추적이 가능한 바, 가정용을 표시하여 업소용과 구분하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건의사항

RFID 적용 주류는 전산을 통해 유통 경로 추적이 가능하므로 용도구분제를 전면 폐지하여 이중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건의한다.

4. 병맥주의 용도구분 표시제 개선

2017년 용도구분 표시제가 개선되어 와인과 캔맥주의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의 구분 표기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병맥주는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어 재고관리 및 운영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건의사항

병맥주의 용도구분 중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을 ‘가정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도록 개선을 요청한다.

RFID 시스템 개선

국세청은 2012년부터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운영 해 오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주류 제조 과정에서 국제청이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가 병마개에 부착돼 출고된다. 이렇게 입력된 제품정보와 거래내역이 국제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되며, 이에 따라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의 모든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위스키의 진품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RFID 적용 주류는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기타주류 등이다.

5. RFID 데이터 결과 공유

투명한 유통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업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RFID 시스템 구축에 힘썼고 시장에 정착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통해 취합된 정보가 업계와는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주류는 모두 도매상 혹은 소매상을 통해 유통되기에, 자사의 판매정보를 각 지역별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건의사항

자사의 시군구 단위의 판매 정보를 상시 열람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하여 정부와 업계가 협업하여 정착시킨 RFID의 기술을 통해 얻은 혜택을 기업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6. RFID 태그 부착 장소

RFID 적용 주류 종류에서 알 수 있듯, 국내에서 병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생산지에서 수입되는 수입주류이다. 하지만 현 제도에서 RFID 태그의 해외 반출이 안되므로 부착은 한국으로 수입한 후에만 가능하다. 물류비용절감을 위해 생산지에서 한글라벨 작업등 국내 수입 후 추가작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태그 부착에 대해서는 그 대안이 없다.

건의사항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RFID 태그를 현지 생산지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입업체는 반출 반입된 수량을 보고하여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다.

개요

1960년부터 한국의 화학산업은 국가의 기반산업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며 주변 국가들의 화학산업의 거점지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는 제조업 분야의 3위를 차지하며 국가의 주요 산업임을 한 번 더 입증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에는 4개의 한국 화학회사가 세계의 50위권 안으로 진입하며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화학산업 국가임이 증명되었다.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또한 발달하였다.

하나,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 목적인 이러한 정책들이 크고 작은 화학사고들에 의하여 국제적인 규율보다 과도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한 편으로는 산업의 원활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EU에서 수십년 전부터 시행된 REACH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이를 통해 이루어진 국제적으로 조화된 시스템보다 더 많은 규제가 몇몇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 산업에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제적인 법과 제도에 맞추어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화학 산업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러한 규제의 차이가 커지면 결국은 자국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화학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의 화학산업의 발전은 한국의 화학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규제의 목적을 지키면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서로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주요이슈

화학물질등록평가법(K-REACH)

1.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 등

현재 신규화학물질의 전국 총량 합산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이 될 경우, 모든 수입자 또는 제작사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있다. 신규화학물질을 미량(연간 50kg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면 신고의 의무만을 수행하면 된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제조·수입을 연 50kg 이상 하게 되면, 미량의 제조·수입자 또한 1톤이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준의 “등록”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면서 제품 제조·수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

건의사항

신규화학물질은 연간 100kg 미만, 기존화학물질은 연간 1MT 미만인 미량의 제조자, 수입자는 당해 합산 및 등록 의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합산한 등록 기

준량이 한 명의 등록자 양이 아닌 전국 총량이므로 기존화학물질은 100톤, 신규화학물질은 10톤으로 기준량을 상향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만일 상향조정을 할 수 없다면 지정, 고시하는 화학물질유해성에 대한 기준을 급성독성 구분 1, 2 혹은 CMR 구분 1 등으로 명확히 하고, 산업용 및 전문가 용은 제외해야 한다. 또한, 발암성 물질처럼 유해성 파악이 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등록은 2030년이후로 시행하되 시험기간(자료생산 기간) 및 공동등록을 고려하여 최소 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단순히 해당물질이 GHS 분류기준에 의거 유해한 물질로 (예: 급성독성 구분 3 혹은 4) 구분된다 하여 이에 따른 당해 물질의 등록 요구는 적절 하지 않다.

2.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수평균분자량 <1,000의 고분자화학물질의 경우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EPI Suite, ECOSAR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사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미국환경보호국(EPA)에서 발행한 “Interpretive Assistance Document for Assessment of Polymers” 에도 상세히 나타나 있다.

건의사항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중에 고분자화학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미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사용에 제한을 둔다면 불필요한 많은 시험자료 생산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EPI Suite, ECOSAR 등의 프로그램 활용을 적극 권장하여 불필요한 시험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법 제4조(국가의 책무)규정한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 이용 및 제16조의2 (척추동물 시험의 최소화 원칙)에 따르는 내용이 될 것임.)

(6의2호)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의 고분자면제 기준은 미국 EPA의 polymer manual의 면제기준과 유사하며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 해당 manual을 따르고 있으므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정부에서 등록면제 대상인 “저우려고분자”로 고시한 고분자물질은 6호의2에 따라 해당 고시목록 제출 만으로 자료의 생략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의견

(i) 중점관리물질의 정의(3의 2호)가 특정표적장기독성(STOT)와 PBT/vPvB의 기준에 있어 EU-REACH의 중점관리물질의 정의보다 무척 엄격하다. 최근 중점관리물질의 기준은 EU-REACH의 중점관리물질(SVHC) 선정 대상보다 더욱 엄격하며, PBT/vPvB의 기준 또한 EU보다 엄격하게 설정 되어있다. 특정표적 장기독성이 발암성 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혹은 PBT/vPvB보다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표적장기독성은 중점관리물질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건의사항

특정표적 장기독성 endpoint를 삭제하길 요망하며, 또한, EU-REACH의 PBT/vPvB 기준을 적용하길 권고한다.

(ii) 중점관리물질과 허가물질에 대한 위해관리추가분석(RMOA)의 부재
EU-REACH의 이행과 과거의 실패사례를 통해 EU에서 소개된 위해관리추가 분석(RMOA)은 K-REACH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U에서는 물질의 평가 이후, 위험관리 평가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당국은 물질을 실제로 사용하는 산업계에서 정보를 얻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사회 경제적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물질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위기 관리 방법을 적용한다. EU-REACH의 첫 시행에서 이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질들이 허가물질로 잘못 지정된 바 있다. 다른 대안 물질을 찾지 못했거나 당국이 확인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은 많은 하위사용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해관리추가분석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평가의 시작 전 단계에서 산업계와 협의하여 물질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키고, 또한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건의사항

위해관리추가분석은 중점관리물질 추가에서 중요한 단계이므로 추가하길 요청한다.

4.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각각 법 10조에 따라 등록된 경우 면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제조, 수입 톤 수 별로 구분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가 다르다. 또한,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등록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표면처리 물질에 대한 면제확인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신규물질이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거나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인 경우 등록 혹은 신고를 하였을지라도 면제신청을 할 수 없다.

건의사항

신규화학물질이 신고 및 등록 그리고 기존화학물질은 1톤 이상일 경우 사전 신고를 하여 등록유예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표면처리 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면제가 이루어진 후 공단은 등록유예기간내에 해당 물질의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기존화학물질 1톤미만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사전신고 및 등록유예없이 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망한다.

5.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함량 기준

또한, EU REACH 제118조 2항에 따르면 혼합물 전체조성, 용도는 상업적 이익

훼손이 가능한 정보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인간의 건강 및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혼합물 내 함량과 관계없이 보고 과정에서 영업기밀인 혼합물의 구성성분 정보를 하위사용자에게 전달하며 공개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본 조항에 의거하여 함량과 관계없이 정보제공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35조에서 별표 1의4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분류기준에 따라 전달하도록 한다면 상위규정인 시행령을 먼저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측면에서 산업계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건의사항

혼합물의 성분 함량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해당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의 분류표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번항 구성성분에도 기재하지 않고 있다. EU REACH 제31조에 따른 분류표시기준을 충족하면서 vPvB 또는 SVHC 후보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된 물질의 정보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화평법도 이를 준용하여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K-REACH 또한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 GHS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구성성분을 기재하고 기재된 성분의 등록정보를 하위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한다.

K-BPR

6. 살생물 제품의 승인 신청자료

유럽연합의 살생물제 관리법(EU-BPR)의 “Guidance on the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 Volume III: Human health Part A: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Volume IV”에 따르면, 만약 살생물제품/제제가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분류 표지규정(EU CLP, Directive 1999/45/EC and Regulation (EC) No 1272/2008)에 근거하여, 각 구성 성분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여 혼합물 전체의 유해 위험성 구분이 가능하며, 각 구성성분 간 공동작용(synergistic effects) 등을 통해 위험성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인체 독성 혹은 환경 독성에 대한 자료 생산이 필요하지 않다.

건의사항

K-BPR도 EU-BPR와 같은 상기 자료 요구 조건을 수용하길 요청한다. 살생물제품 구성 성분의 모든 인체 독성 및 환경 독성 자료가 존재하며 혼합물 제품 전체의 유해 위험성의 구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를 생성해야 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므로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 또한, 이는 동물 복지를 위한 화학물질의 동물 시험 최소화를 제창하는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물질승인을 위한 제출자료에 해당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의 정보를 요구함에 있어 그 내용이 제품승인에 준하는 정도로 제품제조자가 물질 승인 신청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보 (예: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원료 정보) 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영업 비밀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7.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 기준: 타 국가 법에 의한 유사성 인정 시행령(안)에 의하면,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국내 제품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승인된 특정 제품 유형에 한하여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예: EU-BPR 또는 미국 살생물제 관리법(US FIFRA)의 승인받은 제품인 경우),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은 K-BPR의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여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의사항

해외 타법에서 규정하는 제품 유형은 K-BPR의 제품 유형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는 산업계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K-BPR과 해외 타법에서 규정하는 제품 유형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산업계가 이러한 유사성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K-BPR에서 요구하는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의 적법 절차를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hemicals Control Act (CCA)

8.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문제점

EU CLP의 “Poison Centre Notification”제도에 따르면 화학물질 중독사고시 긴급 의료대응목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긴급 요청은 소비자제품 노출 관련 사고였고,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노출사고는 매우 적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MSDS에 기재되는 성분만으로 신고를 가능하게 완화되었고,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제도는 2024년까지 유예가 주어진다. 소비자제품의 경우, 정기적으로 성분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령은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의사항

해외제조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 신고를 국내 수입자를 위해 해결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Mixture in Mixture (MIM) 를 수입하는 경우 최초의 혼합물을 생산하는 해외업체는 직접 한국에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인 신고를 거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미 통계조사를 통해 한국에서는 영업비밀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그리고, 해외제조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대리인이 수입자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대리인 제도가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Poison Centre Notification는 EU에서도 실행 지침서는 아직 준비 단계이며, 아직 미완성 단계인 해외제도를 검증도 없이 도입하는 것은 국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1톤미만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이 왜 우려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1톤 미만으로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산안법 상 규제 물질에 해당된다면 해당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관리하면 되고, 소비자제품의 경우 이미 사용금지물질로 지정되어 있기에 3년마다 안전확인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새로이 중점관리물질을 지정하여 해당 물질이 소비자제품의 0.1% 이상 함유되어 있을 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부는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국내에서 유통중인 유해화학물질을 근로자의 건강보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가 중점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시약판매업,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살생물제 승인, 모든 신규/기존화학물질 등록 등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전부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행법대로 처벌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고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개요

화장품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7년 국내 화장품 산업의 무역흑자가 최초로 4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화장품 생산실적은 13.5조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2017년 화장품 수출은 49.4억 달러(5.6조원)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였으며, 40.1%의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흑자도 37.7억 달러(4.3조원)로 전년대비 18.5% 증가하며 처음으로 4조원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는 수출 지역 다변화의 영향으로,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3.1% 증가한 중국 외에도 동남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도 계속 증가하였다(베트남: +96.9%, 인도네시아: +60.8%, 프랑스: +40.1%, 폴란드: +101.1%)¹.

화장품 산업이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미래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이슈

1. 화장품류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현재 환경부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대한 규제 중에서 화장품류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완화된 기준을 일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불합리하다. 업체의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장품류의 포장방법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건의사항

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화장품류를 제외하거나 최소한 현재 일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완화된 규정이 영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인화점이 25도 이하인 액체를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화장품과 의약품이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유엔에서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이 93도 이하, 유럽에서 60도 이하로 규정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엄격한 규정이다. 또한 EU의 위험물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 <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CLP) Regulation ((EC) No 1272/2008)>에서는 화장품과 의약품 완제품의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U에서는 위험물이 아닌 제품이 한국에 수입되면 위험물로 분류되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제품의 보관이나 유통에 대한 규정은 화장품 완제품의 위험도를 고려해 볼 때 매우 불합리하다.

건의사항

국내 화장품 및 의약품 규정에 따라 이미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화장품과 의약품 완제품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시 광고

2018년 3월 13일에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유기농/천연 화장품 기준 및 인증기관이 존재하며, (USDA NOP, Ecocert, Cosmos, ISO, IFOAM 등) 외국에서는 이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맞는 제품일 경우 유기농 화장품 또는 천연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외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유기농/천연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유기농/천연 화장품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를 표시 광고할 수 없다. 이는 다양한 제품 중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이다.

건의사항

외국에서 인증하는 유기농/천연 화장품 기준에 적합하고 이를 실증할 수 있다면 (예: ISO 기준) 유기농/천연 화장품 표시 광고가 가능하도록 국내 유기농/천연 화장품 기준에 이를 포함시켜 국제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자외선 차단제 SPF 표시 범위

EU와 한국의 SPF 표시 규정이 달라 자외선차단제 SPF 지수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라벨링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품의 자외선 차단 지수 측정 결과 값이 19인 경우, EU 규정에 따르면 SPF 15로 표시되나 한국 규정은 SPF 16,17,18,19 (-20% 이하 범위내 정수) 중 하나로 표시해야 하므로 국내 판매 제품은 SPF 지수를 수정하여 라벨링해야 한다. 이는 제조판매업자에게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해외 제품과 국내 판매 제품의 제품명 상이 등) 야기할 수 있다.

건의사항

현행 -20%이하 범위내 측정된 SPF 지수를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표시 범위를 설정하여 측정치보다 SPF 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는 등 해외 규정과의 국제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5. 어린이 사용 화장품 표시사항

2018년 6월 22일에 입법예고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만 4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한 화장품에 한해 사용 한도가 지정된 원료의 함량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국, EU 등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용 화장품에 한한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금지사항, 사용방법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특정 원료의 함량을 명시하라는 규정은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화장품 통계실적 보도자료 (2018)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단순 함량 표시는 그 화장품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함량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 없는 판단을 하게 할 수 있고 소비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오랫동안 안전성이 검토되었고 화장품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살균보존제를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업체들은 불필요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어린이’의 범위가 사춘기의 연령대까지 포함하여 너무 광범위하여 어린이 피부에 대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용 제품의 화장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건의사항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에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의 어린이용 화장품에 한한 요구사항들처럼, 추가 위해평가를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성분을 사용 금지하거나, 주의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어린이’의 나이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 의약품 등 타법의 기준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어린이 피부와 구별되는 사춘기 연령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 4세 이상 만 12세 미만)

6.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의 지정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또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가운데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고 해당 기관의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그러나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 이미 시험실시기관의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 이에 따라 시험한 결과인지를 이미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법에서 따로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또한 화장품의 효능 시험기관을 국가가 지정하는 해외 사례는 없으며, 해외의 인체시험기관이 지정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그동안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로 인정받은 해외 자료가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규정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심사의 신뢰성과 지속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건의사항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따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며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불필요하다. 또한 규정에 부합하는 해외의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의 자료도 현행대로 인정하여 차별적인 적용이 되지 않아야 한다.

7. 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재 화장품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에 따라 배합량을 포함한 원료의 목록을 수입 전에 전자무역문서(EDI)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제조품의 경우 새로 시행될 화장품법에 따라 유통·판매 전에만 해당 원료 목록을 보고하면 되므로 수입품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적용이다.

건의사항

총리령으로 정해질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 절차에서 국내 제조품과 동일하게 수입품도 유통·판매 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개정을 통하여 수입 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구비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1. 한국패션협회(2018), 세계 패션 산업 현황-국내 패션시장 및 동아시아 국가의 패션시장 규모
- 2. ITU(2017), 개인의 인터넷 사용 비율에 따르면 93%의 한국인이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

패션 및 유통 위원회

개요

한국 소비자들의 패션 수요는 높으며 이들은 대체로 유럽계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호감을 가지고 있다. 국내 패션 시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53 조원에 달할 전망이다¹. 이러한 성장이 많은 패션 및 유통업체들이 한국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일조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해외 여행 경험 등 역시 유럽계 브랜드에게 이점으로 적용한다.

7년전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한국으로 직접 선적되는 다양한 유럽의 섬유 및 가죽제품에게 특혜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많은 유럽계 업체들의 FTA의 이점을 활용하여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안전성 검증 기준 (KC 마크 제거 및 23 개 항목에 대한 안전검증 의무 폐지)과 관련하여 업계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함유된 다이메틸푸마레이트의 양을 평가하는 기준에 국제표준화기구 기준의 사용을 확대한 것은(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의 부속서 1. 어린이용 가죽제품, 5.2.4조항) ECCK의 작년 백서에서 건의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시장에는 많은 규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해외 업체들은 실질적인 수입과 영업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규제 목적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여러 의무조항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준과 상이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추가적인 운영비용과 부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소비자 가격으로 귀결되곤 한다

한국은 인터넷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²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로 하여금 해외 구매 및 가격비교가 가능해졌다. 또한 한국 소비자들의 해외여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두 요인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고 있다.

주요이슈

1. 통관 후 판매 전 안전 기준 준수

현재 수입 제품은 통관 전에 국내의 라벨 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국내 생산자와는 달리 비효율적인 공급 체인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 실용적인 해법은 통관 후에 라벨이 적용되는 회사별로 국내에 라벨 작업 표시장을 선정하는 것이다.

건의사항

위와 같은 통관 전 안전인증 마크를 표기하는 것에 대한 악영향들을 비추어 볼 때, ECCK는 정부 당국에게 통관 후, 상품이 소비자에게 닿기 전에, 안전 기준 준수를 표기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하여 규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외국 및 국내 생산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본 취지에 맞는 방식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직접운송 요건 관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 13조는 본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효율성을 위하여 다수의 기업들은 주로 허브 지역을 통하여 상품을 유통시킨다. 그러나 FTA에 따르면 기업들은 상품을 재포장하거나 재분배하기 위하여 허브 지역을 경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FTA의 엄격한 요건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며 몇몇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과 비즈니스를 할 때 FTA를 활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도록 이어졌다.

건의사항

이에 유럽연합 정부와 한국 정부에게 적절한 환경아래 재포장과 재분배를 허락하는 FTA 개정안을 합의해 줄 것을 제안한다.

3. 가격표시제 규칙 관련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 5조 3항에 따르면, 가격을 표기할 때 15폰트 이상의 크기로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에는 적합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국제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한 일괄적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브랜드 전략을 시행해 오고 있는 명품브랜드들에게는 규정을 준수하기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 5조 1항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판매가격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허용 되어있는 방식은 라벨, 꼬리표(택), 프린트 혹은 종합적인 가격을 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다.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항상 소비자들에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가격정보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제시되고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기가 어렵다. 실무에서 기업들은 가격을 모아서 표기한 종합적인 리스트 형태로 상품에서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거나, 표기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방식을 이용해 가격을 표기하고 있다. (사례: 꼬리표를 사용해서 이미 가격을 표기했으나 제품 안쪽에 집어넣은 경우) 따라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본 법령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제시된 가격표기 이외의 방법도 허용해 줄 것을 제안한다.

건의사항

- ECCK는 가격표시에 있어서 글자 크기 등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에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한다.
-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본 법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5조에 제시된 방법 이외의 방법도 허용해 줄 것을 제안한다.

4. 판매 금지 조항

개정된 전안법에 따르면,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거나 위험하지 않은 형태의 위반(예: 라벨 표시 오류)을 포함할 수 있다.

단순한 오류조차도 이론적으로 판매 금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안법의 적용에 대한 모순 및 산업에 대한 예측 불가능 성을 초래할 수 있다.

건의사항

ECCK는 업계과 정부 당국의 불명확성, 모순, 예측불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기준표준원(KATS)에 지침을 발행하고 각 지방 당국과의 정기적인 의사 소통을 할 것을 권장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의 위반시에는 판매 금지를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5. 안전/품질표시제 산성도 규제 관련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의 가정용 섬유제품 4.1항에 제시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따르면, 가정용 섬유제품의 pH 레벨은 화장품의 pH규제 레벨보다 엄격한 4.0에서 7.5사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가정용 섬유제품이 화장품보다 직접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면이 적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정용 섬유제품의 pH의 규제는 화장품의 pH규제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섬유제품은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며, 각 카테고리는 다른 pH 규제 기준을 적용한다. (유아용 제품, pH 4.0 ~ 7.5, 직접 피부 접촉 물질 용, pH 4.0 ~ 8.5, 비 직접 피부 접촉 제품, pH 4.0 ~ 9.0)

건의사항

가정용 섬유제품은 화장품보다 소비자의 실제 피부에 접촉하는 면적이 적고 영향이 한층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 당국에 pH 레벨의 규제에 대한 완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6. 표시사항 및 방법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6.1.2에 따르면, 개별 제품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할 경우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제조 연월, 최초 판매시점,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ECCK는 적절한 표시 방법으로 수입 일자를 추가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등'을 포함함으로써 그러한 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규제 자체에 포함되거나 서면으로 명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건의사항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규정에 걸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제품을 정의하는 모든 정보에 관한 사항이 가능한 규제화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기술표준원(KATS) 혹은 공무원들에 의한 규정의 해석은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7. 규제 변동사항 관련

유럽계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세계 여러 국가의 내수시장에서 요구되는 법령과 규제를 준수해오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에 따라 가장 소비자를 적정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령 및 규제에 대한 지식 역시 축적해왔다. 이러한 기업들은 관련 정부 기관들과 대화의 장을 통하여 한국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관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해왔으며 직접 혹은 ECCK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왔다.

각종 규제사항들과 관련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법령/규제 변동사항에 대하여 전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규제 변동이 도입될 시, 기업들은 제품생산에서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변동된 규정사항을 준수하기 때문에, 규정 변동이 도입되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이 시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규제의 변동사항에 관해 정부와 회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회사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규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건의사항

법 제정 절차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기업들의 규정준수 및 소비자 보호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정변동 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ECCK와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기를 권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WTO 회원국은 소위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게 그들의 규제 변화를 통보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는 해당 변화가 다른 국가의 입법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또는 해당 입

법이 무역 장벽을 설정하는 경우 입법을 폐지하기 위해, 초안 단계의 입법에
서 이루어 져야 한다.

서효경
이사,
식품위원회

1.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
기 포장

2. 2017식품의약품 (Placeholder1)
통계연보 (2016년 통계)

식품위원회

개요

한국의 식품산업은 크게 두곳의 부처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
전처에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안
전 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 등의 제조·수입에
서 유통 및 판매까지 관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을 진행하였다.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던 농축수산물의 식품안전 업무가 식품
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운영되는
축산물 가공 업무가 식품위생법으로 통합되어 이관 중이다. 이관 후에는 “식품
의 기준 및 규격”에서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을 일반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그리고 축산물의 표시 기준도 식품 표시 기준
과 유사한 형태로 정비되었다. 2018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률」의 제정에 따라(시행 2019년 3월) 현행법상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기준
과 표시·광고 심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관련 조문을 정
비하였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
되어 있던 표시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2018년 6월 합성
향료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허용 물질 목록을 정비하고, 총칙 중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향료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안전성 확인된 향료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19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2월), 통관 전 해외 제조업소
사전 등록 시행, 축산물의 수출국 위생평가 절차 및 수입 기준이 마련되었다(
기존 수입 이력이 없는 축산물에만 해당). 또한, 한국 정부가 생산공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지 실사를 나갈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제품을 규제하는 법안보다 과하게 적
용되는 부분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식품¹ (축산물, 수산물 제
외) 수입액은 14.7억 달러로 전년대비 2.1% 증가하였고, 중량은 1,489만 톤으
로 1% 증가하였다. 가공식품 수입액은 66억 달러로 전년대비 11.7% 증가하였
고, 중량은 5,803만 톤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하였다. 2016년 식품 등 수입
금액 기준으로 제1 수입국은 중국으로 약 31억 달러이다. 이는 전체 식품 등 수
입액의 21% 규모이며, EU(28개국)는 식품 등 수입액은 18억 달러로 12%를 차
지한다².

주요이슈

1. Non-GMO 표시 가능 제품 확대

유럽과 미국에서의 “Non-GMO” 표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사용이 승인된 원재료 즉,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중 유전자 변형 작물을 사용한 제품이 아닌 경우와 유전자 변형 식품이 존재하지 않는 원재료 (예: 복숭아, 사과 등)에 모두 Non-GMO 표시가 가능한 반면, 국내에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표기가 가능하다.

- 1)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 변형 농축수산물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것이어야만 한다.
- 2) 표시 대상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이어야 한다.
- 3) 국내에서 Non-GMO 표기를 위한 조건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표시를 할 수 있기에 가공식품의 경우 Non-GMO를 라벨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수출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위한 레이블을 따로 제작하거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EU는 원칙적으로 GMO 원재료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비의도적 혼입치는 0.9%까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Non-GMO 표시는 다양한 제품에 표시가 허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외에서 이미 Non-GMO로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수입되면, 해당 원재료들이 일본 규정상 Non-GMO 표시 가능한 원재료가 아니어도, 비의도적 혼입치 5%까지 인정하여 원래 영문 표기사항 그대로 둘 수 있다.

건의사항

“Non-GMO” 표시 가능 대상 원재료의 확대(GMO 사용 승인된 식품 7종만 Non-GMO 표시가능 -> 전체 식품), “Non-GMO” 표시 가능 대상 원재료 함량 조정 (예: 50% → 10% / 1순위 → 상위 5순위) 및 운반 및 보관에서 혼입될 수 있는 미량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검토를 요청한다. 또는, EU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정부간 논의를 통해 수출국의 기존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유기농식품 한-EU 동등성 협정 개선

2015년 2월 한국과 유럽연합의 유기농식품 동등성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는 한국 또는 유럽연합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농식품은 동등성 인정 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협정은 3년간 유효하여 2018년 1월말 만료

예정이었으나, 양자간 협의하여 만료기한 없이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지속적으로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유럽에서 생산되고 인증 받은 완제품이 제3국의 물류창고에서 한국으로 발송되는 경우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로 물류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기농식품의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건의사항

한-EU 동등성 협정의 추후 수정 검토 시,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제품의 제조국과 인증국이 유럽연합일 경우 동등성 인정하는 것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3. 국제 식품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국제 CODEX 및 해외의 기준과 달라 수입통관시 빈번한 혼선이 일어나며, 국제적으로 통상 사용되고 있는 표시들이 국내에서만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비관세 장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i) 식품의 “천연” 표시 기준

한국: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천연” 표시에 대한 기준을 ‘합성향료, 착색료, 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 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비식용 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인 경우에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을 세척 등 17가지로 나누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열처리와 관련해서는 섭씨 60도 이상의 열을 가하는 것은 천연의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 외국 규정: CODEX, US FDA, EFSA 등에서는 식품의 “천연” 표시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국제기준위원회 (ISO)에서 발행한 ‘식재료가 천연으로 인정되기 위한 정의와 기준’에서는 천연으로 보는 가공의 범위에 물리적, 효소적, 미생물학적 가공 공정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가공 공정이라도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적용한 경우 천연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 식품 검사청에서는 식품 가공 공정을 최소한의 공정과 최대한의 공정으로 나누었다. 식품의 “천연” 표시를 위해서는 원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이 크게 변화하는 최대한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최소한의 공정은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천연”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살균, 멸균을 포함한 가열 공정을 최소한의 공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건의사항

해외에서는 보다 폭넓게 “천연” 범위를 인정하여 살균, 멸균 공정을 거친 제품도 “천연”으로 표시하는 제품이 많다. 반면, 한국에서는 식품 안전을 위해 살

균, 멸균 등의 공정을 거치는 식품은 다른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기준을 적용하면 “천연”으로 표시할 수 없다. 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국제 기준과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의 오해와 물류비용이 절감되기를 희망한다.

(ii) 천연 향료의 정의 및 규격

한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천연 향료의 범위를 명시된 기원 물질 또는 적합한 식품 원료로부터 추출, 증류 등의 제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정류, 추출물, 올레오레진 등 또는 천연 향료에 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2종 이상 혼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 보존 등을 위하여 물, 주정, 식물성 기름을 첨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CODEX³⁾: 천연 향료 (천연 향료 물질 및 착물)는 식물 또는 동물성 원료로부터 1) 물리적 공정(증류, 용매 추출법 등과 같이 비의도적이지만 불가피한 화학적 구조의 변화 허용) 2) 효소적, 미생물학적 공정 3) 전통적인 식품 조리 방법(예: 건조, 로스팅, 발효) 등을 이용해 얻어내는 향료 물질 또는 4) 이러한 향료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센셜 오일, 에센스, 추출물, 단백질 가수분해물, 증류액, 효소 분해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향료 물질의 생산, 저장, 가공 및 사용을 위해서 향료 물질이 아닌 식품 원료를 향료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도 ‘천연’으로 표시할 수 있다⁴⁾.

EU (EC No. 1334/2008): 천연향료는 식물성, 동물성, 미생물 유래 원료, 그 외 식용 가능한 식품 원료 등으로부터 적절한 물리적, 효소적, 미생물학적 가공을 통해 얻는 향료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US: 천연 향료를 식물 유래 원료, 육류, 해산물, 가공류, 난류, 유제품 또는 발효식품에서 유래한 향료 및 CFR에 등재된 물질에서 얻어진 에센스 또는 추출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천연 향료의 형태로는 에센셜 오일, 에센스, 올레오레진, 추출액, 단백질 가수 분해물, 증류액 또는 로스팅, 가열, 효소 분해로 생성된 물질들로 본다⁵⁾.

건의사항

한국은 제 외국에 비해 천연 향료로 인정되는 제법, 품질 보존 등을 위해 첨가 가능한 물질의 종류가 적어, 해외에서는 천연으로 표시되는 향료의 경우에도 국내 규정에 따라 합성 향료로 표시하거나 혼합제제로 표시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천연으로 구분되어 통용되는 물리적 공정 및 용매추출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4. 식품 수입검사 절차의 개선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데도 매 선적마다 요구되는 서류와 표기 허용 여부가 달라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는 글로벌 업체들에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한글표시사항은 수입자가 사전 검토한 결과에 따라

포장지에 반영되어 해외 생산지에서 대량생산되며, 국내 수입 당시 식약처 정밀검사 결과, 내용 정정이 필요할 경우, 수입자의 물류창고에서 스티커 부착 작업 및 해외 생산지지에 패키지 재고를 폐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된다. 원인으로,

- 1) 국내 및 해외 식품규격 간에 일부 내용 상이하며, 한글표시사항 개발은 수입자의 사전 검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예) 천연/합성 원료, 무첨가 표시 관련, 국/내외 허용 사례가 다르다.
- 2) 수입 진행 시 담당하는 공무원에 따라, 동일 제품에 대한 요구하는 정보 수준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 원료의 제조공정 및 2,3차 원료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 3) 식품의사전서류검토를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현물의수입시점에서서류검토및 규격검사(이화학/미생물)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때, 검토 결과에 따라 통관 지연에 따른 재고 부담 및 유통사로부터 납기지연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된다.

건의사항

해상운송(유럽의 경우, 6주 소요) 및 식품 특성(유통기간 4~6개월), 고객사 납품 조건(잔여 유통기간 90일 이상)을 고려할 때, 통관 시 서류 검토 및 보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절감이 절실하다. 서류 검토와 한글표시사항 디자인이 사전 검토되는 사전 신고제의 활성화와 연간 수입 물량을 미리 신고하여 수입하는 계획 신고제의 검토를 요청한다.

5.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필요

개정 사항 등의 변화에 대처하는 시간이 국내 제조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수입식품은 경과조치 없이 주어지는 변화에 매우 불리하다. 식품의 안전성과 관계없는 행정적 절차에 의한 내용은 충분한 준비기간 및 경과조치 부여가 필요하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현지에서 한글표시사항을 작업해서 들어오는 경우 디자인에서 제품 포장 및 선적까지의 시간이 길게는 3-4달 소요되며, 단가 조정을 위해 대량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글 표시사항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 기업에서는 보유 중인 상표를 수시로 폐기하는 등 이에 따른 관리 비용 및 자원낭비가 상당하다.

건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의 각 부처 표시사항 변경 적용의 정례화 및 3년의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희망한다.

1. 참조: <표3.1>, 주요국가별 급여 적정성 평가방법의 특이사항,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심평원, 2015.2

2. 2017 의료기기 생산실적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8)

헬스케어위원회

개요

헬스케어 산업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고령화 추세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을 포함하여 해외에서는 신약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국가적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 평가 중심의 급여적정성 평가체계는 혁신에 대한 가치 및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며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되고 신약개발의 동기부여도 약화된다.

혁신에 대한 가치평가나 환자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등에 있어 유럽의 사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의약품의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질병의 의중도, 사회적 비용, 삶의 질, 상대적 의약적 가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관점을 고려하고 있다.¹ 그리고 이러한 고려는 혁신적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백신의 사용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방향의 하나인, 질환의 위중도 증가로 환자의 질병부담 및 정부 예산지출의 증가를 막고자 하는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접종률, 안전성, 임상 및 경제적 편익 등이 개선된 혁신적 백신들이 널리 접종되어 보다 건강한 사회와 효율적인 국가 재정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2017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6조 1,978억원 (+5.5%)으로, 7.6%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²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규제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기대한다.

주요이슈

<제약 산업>

A. 시장 접근성

신약의 가치 반영

1. 경제성평가

ICER임계값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1GDP/QALY는 아직까지 적절한 수준에 올라와 있지는 않다. 정부는 암이나 희귀질환의 경우에 ICER임계값을 상향하여 2GDP/QALY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암이나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ICER임계값은 보수적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질환이나 환자

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생존기간이 짧거나 극소수 환자만이 있는 희귀암이 아니어도 질환의 중증도로 인한 질병부담이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질환 등에 대하여 보다 높은 규제의 탄력성이 요구된다.

건의사항

암, 희귀질환 등 특정질환이나 1~2 GDP/QALY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질환의 중증도, 대체약제유무, 삶의 질, 혁신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탄력적인 ICER역치값을 적용해야 한다.

2.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확대 적용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의 대상은 대체제가 없어서 임상적 필요도가 높거나 환자수가 200명 이하로 근거 생산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희귀질환의 경우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경제성평가를 전제로 하는 위험분담제에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 또한, A7 국가의 조정가 산출 기준이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과거에 설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건의사항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 도입 취지가 임상적 필요성과 제한된 환자수로 인한 근거 생산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를 지나치게 소수 환자로 제한하기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 규정에 근거한 희귀질환 등으로 확대 적용하여 실질적인 환자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적용 중인 A7 조정산식의 출처 및 약가 유형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마련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식을 변경해야 한다.

환자 접근성

3. 위험분담제도

현행 위험분담제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약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위험분담제로 등재된 이후 후발 약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위험분담제는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현행 약가 규정으로는 도입이 어려운 신약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건강보험재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건의사항

대상질환 범위를 암과 희귀질환으로 제한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고, 후발 신약에게도 적용하여 환자의 치료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제네릭(generics)이 나올 때까지 위험분담제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급여

확대 및 재평가 시에 비용효과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환급 절차는 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이중 과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4. 환급제 부가가치세 과부담(이중부담) 이슈

위험분담제도는 2014년에 환자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약제 급여제도의 하나이다. 특히 위험분담제도의 환급제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중립을 지키는 등 혁신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환급제는 회사와 국민보험공단간 위험분담계약에 기초하여 보험급여청구자료에 따라 회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제도이다.

회사는 표시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공단에 지불하는 환급을 재정보고서에 매출차감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정 절차가 현행 규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회사는 10% 부가세 기준보다 높은 부가세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30% 환급율인 경우, 실제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세율은 19.4%로 기준 부가세 10%보다 9.4% 높게 부담하고 있다.

위험분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호주의 경우에도 표시가격이 아닌 실제 가격(net price)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즉, 위험분담제 환급제를 시행하는 다른 어느 나라도 이로 인해 부가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의사항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공단에 환급하는 금액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결책이 필요하다. 본 개정을 통해, 회사는 높은 부가세 부담이 아니라, 기준 10% 부가세 기준에 맞게 세금을 부담 할 수 있다. 이는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세금부담을 확인하면서도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5. 선등재, 후평가 제도의 도입

한국 정부는 일부의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을 개선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RSA(2013년)와 PE 면제 제도(2015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적이다. 특히 경제성평가의 특성상 많은 근거자료가 요구되지만 일부 희귀질환의 경우 발매 당시 충분한 근거 생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는 장기간의 비급여로 이어지며 환자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건의사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선등재, 후평

가' 제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등재, 후평가' 시스템은 최소한의 건보 재정 영향으로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을 가속화함으로써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등재, 후평가' 시스템이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를 포함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약물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 약가 관리

6. 사용량-약가연동제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비용효과성 또는 재정절감을 입증한 약제가 환자들에게 널리 사용될 경우 약가를 추가로 인하시키는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급여를 결정시 의도했을 정책적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조달책 등으로 최근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의사항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는 다양하고 중복적인 약가 사후관리 체계에 추가적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강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등재제도 및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거시적으로 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사후관리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7. 선별급여

정부는 전액본인부담 급여의약품에 대하여 2022년까지 본인 부담률 30, 50, 80%, 차등화를 통한 약제의 선별급여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직권으로 대상 약제가 선정되고, 적용되는 선별급여 약제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기준확대에서 적용되는 사전약가인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건의사항

선별급여제도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국민의 약품비 부담 완화가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이므로, 대상 약제에 대한 추가적인 약가인하를 생각하고 신속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실질적인 재정영향 분석이 가능한 시점에서 사용량연동제도 등을 통한 사후 약가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성

8. 혁신신약 약가 우대

2016년 7월 글로벌 혁신신약에 약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발표되었고, 2017년 6월 개정안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세계 최초로 국내 허가를 취득하

거나 전 공정 국내 생산을 하는 경우, 매출액 대비 3% 이상의 사회공헌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제약사가 상대적으로 적용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의사항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은 규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불공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혁신적 의약품의 가치가 적절히 인정될 수 있도록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한-EU FTA정신에 따라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9.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보완해주기 위하여 2012년 5월 31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평가, 선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세제, 의약품 가격 신속등재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44개 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 중 단 2개 회사만이 외국계 제약회사이다. 이렇게 외국계 제약사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와 그 성과만을 반영하는 평가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대규모 3상임상들이 한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사와 외국계 제약사의 회계비용 처리의 차이 때문에 연구개발비 항목에 불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내제약사에 유리한 평가기준은 국내 제약사 위주로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는 쏠림 현상을 만들었고,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기업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외국계 제약사에 차별적인 정책이다.

건의사항

국내외를 막론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요 활동에 대하여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항목에 추가한다. 신약매출 비중을 정량화한 혁신지수 (freshness index)나 신약의 출시 성과 및 공공보건에 기여한 성과 등이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항목에 추가되어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10. 염변경 의약품의 특허존속 기간 연장

2016년 특허심판원 및 2017년 특허법원은 유효성분이 동일하나 다른 염류를 가진 후발 의약품에 대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것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해야만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후발 의약품에 대해 특허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특허 존속 기간 연장의 근본적인 목적과 대치된다. 유럽, 미국에서는 특허권 연장의 범위가 동일한 유효성분을 가진 염변경 의약품에도 적용된다.

건의사항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특허 존속 기간 연장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염변경 의약품인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타당하다.

절차관련

11. 투명성 강화

(i) 의약품경제성평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외에 회의자료를 공개함으로 인해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건의사항

이에 추가하여 외국의 HTA 검토기관과 같이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 암질환심의회위원회, 경제성평가소위원회 등의 검토내용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평가신청 제약사에게)

(ii) 의약품실거래가 조사; 2018년 4월 1일자로 239개 제약의 7,000여개의 약제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의약품 상한금액조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각 약제의 가중평균가 계산에 사용된 실거래 가격 및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공유가 없었다.

건의사항

이에따라 제약사들은 상한금액 조정에 대한 검토 회신이 어렵고 또한 향후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 시행 이전에 가중평균가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공유가 필요하다.

B. 백신

12. 혼합백신 접종비 산정방식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다양한 질환들을 한번에 예방할 수 있는 DTaP 기반 혼합백신(4, 5, 6가 등)은 주사접종 횟수를 감소하여 피접종자인 영유아의 주사 관련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복잡한 접종스케줄을 단순화하여 접종률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는 9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혼합백신 사용 보편화에 제약 요인이 존재하며, 그 요인 중 하나는 혼합백신 접종비 산정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혼합백신의 접종비 산정방식은 혼합백신을 사용할수록 해당 병의원의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건의사항

접종비용을 백신에 포함된 성분 수 기준으로 책정하거나, 혼합백신 사용으로 접종률을 높인 병원이나 인센티브를 부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혼합백신 사용을 활성화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 횟수 감소와 접종률 향상을 높

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13. 백신제품의 중복시험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관리 시험 관련하여 수입사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중복된 품질관리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처에 의한 품질관리시험 및 수입사에 의한 추가적인 품질관리 시험을 말한다. 반면에 국내 제조사의 경우에는 제조처에서 한번의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생물학적제제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출하승인검정에 해당되는 시험항목은 수입사에 의한 시험이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7월,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의 국가출하승인 검정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생물학적 제제 수입사는 국가출하승인 검정과 무관하게 전 항목에 대한 품질관리시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검정 프로세스와 무관하게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전 항목 시험을 요구하며, 국가출하승인 검정은 정부기관에 의한 품질검증 과정으로써 수입사의 품질관리시험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전문의약품의 품질검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단 한 항목의 시험항목을 수행하기 위한 분석용 컬럼이 예상치 못한 실패가 있었고, 그와 동일한 분석용 컬럼이 공급중단 등의 이유로 손조롭게 준비되지 않으면 한 항목의 시험이 완료되지 않아 전체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의약품의 품질상황 등과 같은 공급문제를 야기했고, 의약품 공급차질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식약처와의 상담에서도 식약처는 제품출하를 위해서는 수입의약품에 대한 모든 시험항목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의사항

적합성 평가 수용에 대한 한-EU FTA조항³에 근거하여, 생물학적제제 해외 제조처의 품질시험결과를 수용하여 국가출하승인 검정 대상이 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국내 수입사의 불필요한 중복시험이 이뤄지지 않기를 요청한다.

C. 인허가 관련

14. 제조업 허가 (위탁제조)

국내에 제조 시설이 없는 다국적 제약회사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에 대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가질 수 없고, 또한 제조판매 품목 허가권을 부여했던 회사와 계약이 만료되어도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직접 양수할 수 없다. 따라서, 다국적 제약회사는 국내 제조업자 중 제조 및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대신해 줄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정으로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산업에 투자하고 협력하는데 있어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약사법 관련 규정에서 위탁제조를 위한 제조업허가의 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국적 제약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제제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쌓는 기초가 되도록 하고, 다국적 제약회사와 계약

을 맺은 제품의 제조품목허가의 양도양수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2017년 10월 24일, 약사법이 개정되어 2018년 10월 25일부터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 및 희귀 의약품”이 위탁제조 대상 범주로 추가될 예정이다 (약사법 제31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③ 3.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4. 제1조 제1항에 따른 한국희귀질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 <2018년 10월 25일 시행>”

그러나, 법 제31조 제3항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재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받은 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18년 1월 31일 입법 예고되었고 검토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위탁제조 확대 범위를 재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받은 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으로만 한정할 경우 다국적 제약회사는 여전히 국내에서의 사업 투자 및 협력에 제약을 받게 된다.

건의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하여, 약사법 제31조 제3항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재심사대상 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만 한정해서는 안되며, 약사법 제31조 제3항 제3호의 범주로서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 (위탁제조업 허용 범위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

15. 조건부 승인

항암제와 같이 의학적 요구도가 높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환자접근성을 위해, 식약처가 미국 FDA 신속승인프로그램(accelerated approval program), 유럽 EMA의 조건부허가승인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zation)과 유사하게 신속 승인을 위한 검토 절차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조건부 승인은 보통 난치성 질병을 가진 환자에 대한 단일 암 연구(single-arm study)로 객관적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s) 같은 대리 결과(surrogate result)에 기초한다. 승인 조건은 전체생존결과와 같은 전체 승인을 위한 확증적 연구 결과를 수행하여야 일정 기간을 부여한다. 식약처가 검토시스템에 대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3. 한-EU FTA조항: 양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적합성 평가절차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비임상 시험관리기준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수행된 때, 그리고 양 당사자의 해당 관행이 국제현행에 따르는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신의 적합성 평가 4)를 수용해 달라는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

<쟁점>

- 유럽과 미국에서는 승인 확증을 위해 요구되는 확증적 연구는 보통 치료법에 어느정도 반응하는 환자 또는 질병 초기단계의 환자에서 수행하고, 허가 신청과 관련된 인구집단에서 할 수 없다.
- 대부분의 경우, 대조군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이슈, 시장에서 의약품의 입수 가능성, 말기 상태의 낮은 유병률 등 여러 이유로 동일한 환자 그룹에서 확증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식약처는 극히질질환의 경우에 있어 객관적 반응을 같은 대리 결과에 기초한 승인 허가를 주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의사항

- 승인 조건으로 수행될 확증적 연구는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난치가 아니거나, 질병 초기 단계의 환자에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 승인 조건은 환자 추적자료로부터 얻은 전체 생존자료 등, 다른 대체 자료를 인정하여 보다 유연하여야 한다.
- 매우 낮은 발병률로 의학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에는, 객관적 반응률과 같이 대리 결과에 근거하여 품목허가를 승인할 수 있는 허가승인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객관적 반응률(ORR: Objective Response Rate) 같은 대리 결과자료에 기초한 조건부 승인은 보다 신속한 환자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로 식약처가 도입하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승인 조건을 좀 더 유연하게 하여 현재 의학적 요구(medical needs)가 매우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 혁신 신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국내 환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16. 초기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시험(IND: Investigational New Drug) 승인 검토 과정 중 추가 자료 요구

점점 더 많은 글로벌제약사들은 연구개발활동에 집중하고 종양학 (면역종양학) 및 면역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 분야는 다양한 병용치료가 다른 인구집단에 상당한 이점을 보이므로, 많은 혁신적인 연구들이 제 1, IIa 상 등 초기 임상이 동시에 설계, 수행되고 있다. 식약처가 유럽, 미국 또는 일본의 허가 당국에 제출하는 자료 외에 더 많은 유효성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글로벌제약사들은 적시에 이런 초기 임상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처는 (예를 들어, 대상환자는 국내에서 모든 사용가능한 치료법에 실패한 환자이어야 함) 국내 대상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한국을 위한 프로토콜 수정을 빈번히 요구한다. 이 같은 요청은 (식약처/중앙 연구팀 간 협상, 또는 연구 설계 수정)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시간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글로벌제약사들이 보다 많은 초기 임상을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러한 초기 연구는 의료계

에게 보다 과학적, 의학적인 가치가 있다.

건의사항

보다 많은 초기 임상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한국 허가당국에서 추가적인 자료 요구를 줄여 임상용신약 검토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17.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기기/전자기기/물품 등의 수입 절차 기간

임상시험 디자인이 점점 복잡해 지면서, 더 많은 의료기기 (ECG, actigraphy sensor 등), 전자기기(스마트폰, 전자탐복, 센서 커넥터 등) 및 실험실 기구 등이 글로벌 임상시험 용으로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들 물품의 수입 절차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복잡하고 더 많은 수입승인 신청 서류가 필요하며 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있다. 한국에서 승인된 적이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 절차는 더욱 오래 걸리고 간혹 한국에선 해당 기기 수입이 어려워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식약처에 제기되었고 일부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시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디자인의 임상시험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의사항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물품은 다른 상용화 제품의 수입절차와는 별개로 하여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임상시험 승인서, 송장(invoice) 만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를 제안한다.

18. 병원이 임상연구 사이트에서 일할 임상연구 지원기관 (SMO: Site Management Organization) 소속의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사용을 막고 있는 국내 노동법

서울과 지방의 주요 임상연구 사이트 (특히, 항암제)들은 숙련된 임상연구 코디네이터가 매우 부족하여, 몇몇 국내 사이트는 신규 환자 또는 신규 연구 등록을 할 수 없다. 현행 국내 표준임상연구지침에서 임상연구 사이트 직원을 대신하여 임상연구 사이트에서 일할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국내 파견관련 노동법과의 충돌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건의사항

병원이 임상연구센터에서 일할 임상연구 지원기관 소속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 지원기관 관련 규정과 국내 노동법과의 충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D. 통관/관세 관련

19. 동물유래 시험 시약 통관을 위한 검역절차

국내 출하시험을 위하여 품질검사용 시약을 수입할 때 동물유래 수입 품질검사용 시약의 통관을 위해서는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역절차에서 수입국과 제조국이 상이한 경우에 양 국가에서 각각 발행한 확인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건의사항

적합성 평가 수용에 대한 한-EU FTA조항에 근거하여, 생물학적 제제 해외 제조사의 검역 확인서를 수용하여 제조국의 중복적인 검역확인서의 발행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건의한다.

20. 임상용 의약품의 관세면제

임상용의약품의 관세면제는 한-미, 한-EU FTA 발표와 함께 2016년 이후 해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많은 글로벌 제약기업은 FTA를 통한 임상용 의약품의 관세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주요이유는 많은 임상용 의약품들이 미국이나 유럽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면제 해제 이후 임상용 의약품의 관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28개 제약기업이 지불한 관세는 2016년에 115억원, 2017년 140억이었다.

건의사항

국내 임상시험을 육성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진흥하기 위하여 FTA와 무관하게 임상용 의약품의 관세면제를 요청한다.

<의료기기 산업>

21. 의료기기 가치 인정

가치평가 기준(VAS)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혁신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가치가 적절하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건의사항

VAS 제도를 의료기기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2. 가격인하에 수입가격의 적용

정부는 가격 인하에 수입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지속적인 인하로 업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건의사항

가격인하에 수입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가격 결정시 독립적 검토 절차

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23.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표준코드

2019년 7월부터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인 표준코드와 관련한 법적 규제 정비가 지연되고 있어 업계의 UDI 도입에 따른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준코드 생성, 바코드 표시 및 통합정보 등록에 대한 3종 길라잡이가 2018년 6월에 발표되었으며, 표준코드와 관련한 신규 고시인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은 아직 행정예고 절차 중에 있다.

건의사항

표준코드에 대한 최종적이며 상세한 요구사항이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사전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4. 공급내역 보고의 실거래가 정보

행정예고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7월부터 4등급 의료기기에 적용되어 2023년 1등급까지 확장될 공급내역 보고 내역에 실거래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별도의 회신은 없다.

건의사항

정부는 산업계의 우려에 대한 공식적인 표명을 통해, 필요시 불합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25. 정보통신망법의 규제완화 요청

한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서비스 이용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 또는 파기(삭제)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이 법령 때문에, 회사는 매년 일정수의 고객 정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의사항

개인정보보호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나중에 고객의 계정을 삭제하는 접근방법보다는, 고객들에게 먼저 명확하게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수신거부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회원정보의 분리 또는 파기가 되는 기준인 휴면 기간을 1년이 아닌, 최소 5년이상으로 늘려서 회사와 고객 모두의 불필요한 수고를 줄여야 한다.

4. 한-EU FTA조항: 양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적합성 평가절차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비임상 시험관리기준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수행된 때, 그리고 양 당사자의 해당 관행이 국제현행에 따르는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신의 적합성 평가서를 수용해 달라는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

개요

ECCK의 보험위원회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보험사들의 대변인으로, 업계와 정부 간 소통의 매개체로서 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촉진시켜서 한국의 사업환경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회원사로는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SE, AXA손해보험, BNP 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 BNP 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 오렌지라이프, 스위스재보험 등이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산하 보험위원회는 정부가 보험상품 고객들을 적절히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회사들이 우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규제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이와 같은 규제환경의 핵심요소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지향하되 보험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
-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명확하고, 시장상황 및 정책 목표에 부합하되, 신규 규제 신설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 보험사들의 일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예측 가능하고 공백없는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 감독과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밀접한 협력
- 모든 시장참여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 일괄적 규제보다는 혁신을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

주요이슈

1. 한방병원 치료 및 수가 기준 제정

보험 업계의 대인보상 비용 중 한방병원 치료비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9%, 2015년 23%, 2016년 28%, 2017년 31%). 여기에 더해 한방병원 보상비용 가운데 외래환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9%이다. 따라서, 경미한 부상 건에 대한 평균 보험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비급여 한방병원 치료에 지불되는 보상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한방병원에 지불한 전체 보상금 중 비급여 치료의 비중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 및 2017년, 보험업계가 한방병원에 지급한 전체 보상액 중 50%가 비급여 진료비로, 이는 2015년 34% 및 2016년 40%에 비해 증가한 것).

비급여 한방 진료는 주로 침약 및 한방 물리 요법 (예: 침술)으로 이들 진료에 대한

보험업계의 보상액이 2016년에는 전년인 2015년 대비 163% 증가하였다.

보험업계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한방치료 및 수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표는 1년 이상 연기되어 온 상태이다 (정부의 마지막 사전 공표에 따르면, 기준 제정에 대한 공표는 2017년 1월 20일로 예정).

많은 보험사들이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출범한 “한방 의료 비용 개선 TF”에 참여하여 한방진료 표준수가 및 한방약재 원산지 표기 기준 정립 및 심평원의 한방 진료비에 대한 심사 강화를 통해 현재의 한방 진료 관행을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계는 다른 유관기관 (예: 국토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이하 금감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준비해 오고 있다.

건의사항

국토부는 한방진료 및 수가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공표하여 과잉진료 및 허위청구를 줄여야 한다. 더 나아가, 협약과 관련한 기준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한방병원 보상 비용 중 54%가 비 급여).

위의 항목들에 대한 기준 제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한방 병원간 동일진료에 대한 진료비 차이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양방 및 한방 병원의 과잉진료 및 중복 물리치료요법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지출을 줄일 것이다.

2. 한국 보험 시장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2016년 금감원은 금융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보험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에서 제한사항을 지켜야 하고, 기타 다양한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i)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은 국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금융 기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조 1항>

(ii) 개인 고객 데이터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나, 고객의 개인 식별정보 혹은 개인 신용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 데이터의 경우 가능하다. 비중요로 분류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 그 사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 회사를 위한 금융보안원의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그러나 정보의 일부만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부분의 프로세스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부분 사용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 진

정한 효용을 이끌어낼 수 없다. 비효율성이 생겨나고, 절감과 효율성의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글로벌 회사들은 민첩성을 키우고 신규 상품의 출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 혹은 개발했다. 한국 시장의 다수의 보험 회사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건의사항

금감원은 보험 회사들이 개인 정보를 클라우드(역외 클라우드 포함)로 옮기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이들 보험 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고급 IT 기술을 이용하고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사, 메신저, 이메일 및 내부 트레이닝 시스템과 같은 고객의 개인식별정보 혹은 개인 신용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 데이터에 관하여는 이미 클라우드 아웃소싱이 가능하다. 상기 언급한 비 핵심 비즈니스 시스템의 경우 클라우드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회사들은 상품 영역과 같은 중요 비즈니스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또한 고객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와 같은 단기간 동안 고 성능을 내야 하는 단기 운영 시스템의 경우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운영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면, 단기 운영 시스템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그 결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어 비용 편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보안 측면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규제들이 보안의 세 축(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담보한다. 이를 위해 직무상의 신의성실 및 노력(Due Care, Due Diligence)을 기울일 것이 이미 요구되고 있으므로, 보험 회사들은 이미 이를 준수하고 있다.

3. 신용생명보험을 구속행위 대상 상품 목록에서 제외

은행업감독규정(제 88조 6항), 보험업감독규정(제 5-15조 9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 3-12조 제2항)에 의거 신용생명보험은 본질적으로 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상품은 대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 상품의 목적은 이 상품의 보험 계약자인 동시에 대출 차용인인 고객이 사망할 경우 은행(대출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용생명보험은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이 취할 수 있는 물건(예: 부동산, 금융상품, 보증 계약서)의 일환으로 취급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금감원이 발행한 [방카슈랑스관련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매뉴얼] 등에 따르면, 신용생명보험을 대출진행과정에서 해당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한방법으로 고객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대출과

정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소개하고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화재라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죽음 및 기타 질병이라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대출고객들에게 신용생명보험상품을 추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규정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차주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 및 상품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 단체보험, 일반 손해보험, 화재 보험 등 재물 보험 등이 있으나, 신용생명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주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신용생명보험은 여타의 보험과 비교해 보면, 적은 납입 보험료 측면에서 가장 차주의 이익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유사 시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보험이기에, 해당 상품 리스트(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3-12조 제2항)에 포함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된다.

건의사항

신용생명보험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3-12조의 차주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 및 상품 리스트에 포함시켜 주길 요청한다.

4. 교차판매 제도적 허용 및 정보공유

현재 보험업법에 규정된 생명·손해보험 교차판매 제도는 회사 간 업무 제휴 형태는 아니다. 즉, 현행 교차판매 제도는 보험 설계사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생명/손해 보험사 외에 다른 하나의 손해/생명 보험사를 선택할 재량을 갖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차판매 제도는 현재 보험업법(제82조) 하에서 유지되고 있는 1사 1전속제의 취지, 즉 보험사가 그 소속설계사에게 교육 등을 투자하여 관리하라는 취지와 배치될 뿐 아니라, 설계사의 수입원 중대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소속설계사의 교차판매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설계사 교육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보험 소비자에게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건의사항

보험사들에게 교차판매 제휴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보험 설계사들로 하여금 교차판매에 대한 정보(교차판매 보험회사 등)를 소속 보험사에 공유하도록 보험업법 및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요청한다.

5. 법인독립대리점의 책임과 법인독립대리점의 불법행위로부터 보험회사 면책 일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들의 경우 간혹 보험회사보다 판매채널규모가 크고 보험회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혹은 그 임직원이 고의적으로 일으킨 민원이나 금융사고 혹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개

인정보 유출사고까지 보험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보험업법에 따르면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고 보험회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경우 면책되도록 하고 있는데, 모집과 관련이 없는 독립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까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법인보험대리점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험회사가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분할이나 설계사의 대규모 이탈 시에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당 보험회사의 민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민원은 해당 보험회사의 민원 계산시에 제외되어야 한다.

건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에 전속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및 법적으로 매우 독립적으로 행위 하기 때문에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 민원은 보험회사가 아닌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자체의 민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통제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험회사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다른 경우에 비하여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6. 보험상품과 은행상품에 동일한 구속행위 기준을 적용

관련법규 및 규정:

은행업감독규정(제 88조 6항1,2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7조 1항 4호), 보험업감독규정(제 5-15조 9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 3-12조)

은행업감독규정의 제 88조 6항 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조 9항에 따르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판매한 보험상품은 보험료의 금액과 상관없이 구속성 상품으로 분류되는 반면, 은행업감독규정의 제88조 6항 1호에 의하면 은행상품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및 월납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어서는 경우 구속성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두 상품에 적용되는 구속성 기준이 달라 규제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융위로부터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은행이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상품보다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채널의 최대 수수료 한도는 다른 보험 판매 채널의 최대 수수료 한도의 50% 이하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은행상품보다 보험상품을 추천할 만큼 수수료의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보험료금액이 총 대출금액의 1%를 넘지 않는 규제가 추가될 경우, 보험상품 판매로부터 실제로 받게 되는 수수료 금액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두 번째는, 보험상품은 은행상품과 같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는 고객 민원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은행 직원은 기본적으로 수수료 이익보다 장기적인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출금액의 1%이하의 월보험료의 보험계약은 소액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민원의 발생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사료된다.

건의사항

보험상품 대해 은행상품과 동일한 구속행위기준을 적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 대안으로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6항 2호의 적용 예외 사항으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1항 4호에 언급된 소액 은행상품에서처럼 소액 보험상품에도 이에 상응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한다.

7. 특수형태근로자 관련 법률안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제공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 개정법안 가운데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고용보험위원회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가입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이는 보험설계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확인된 법리에도 어긋나며(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므로 이를 의무보험으로 하기 위해선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 상당수의 보험설계사(특수형태근로자의 70% 이상을 차지함)가 고용보험의 의무화를 선호하지도 않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홈페이지)에는 대다수의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16.5%만이 찬성)을 피력한 조사결과를 게재하고 있는 사실은 놀랍기까지 하다.

보험회사는 위촉계약을 통하여 보험설계사들에게 많은 수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과중한 부담을 받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위 법률안들이 입법되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면, 보험업계가 현재와 같이 많은 수의 설계사 일자리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가 없게 된다.

건의사항

위 법률안에서 다루는 특수형태근로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입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8.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법률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상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상법의 경우 (1)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과 (2) 보험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분쟁조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보험업법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청구 시점부터 지급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건의사항

상법 개정안 (1)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이 불과 2014년의 일인데, 이를 추가적으로 연장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 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위 법률안의 내용을 도입할 경우에는, 위 5년의 시효가 법 개정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부칙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상법 개정안 (2)와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유독 보험계약에 대하여서만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마련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하나의 단일법에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정부가 2017년 5월 23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제출된 관련 의원안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정부안의 경우, 금융업권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one size fits all’ 식의 접근방식으로 인해, 보험업에 미칠 부정적 파장이 매우 크다. 예컨대, 보험상품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상품인 변액보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적합성 등 원칙을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보장성 보험에까지 적용한다거나, 모든 금융상품을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및 대출성으로 분류하면서 별개의 보험상품이 아닌 보험약관대출을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입법례다. 또한, 법안에서 규정한 금융사의 6개 판매행위규제(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위반시 해당계약을 5년이 지나서까지도 해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험업 하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제도 등을 감안할 때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일이며, 변액보험의 경우 판매행위규제와는 무관한 투자손실발생에 대해서까지 약용할 소지가 있다. 법안 제48조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인 소비자가 아닌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 및 소송사안에서 기 확립된 입증책임에 관한 민법상의 기본원칙을 법적 근거 없이 전환하려는 시도로서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동 조항에서 제조물책임이나 의료분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를 금융회사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과실책임주의는 보험사기와 블랙컨슈머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무고한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무과실책임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가 부담하게 될 비용도 결국은 소비자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액수를 2천만원 이하로 정하여 분쟁조정 절차 개시 시 완료 전까지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일뿐 아니라 그 한도 금액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대다수 분쟁 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폐지하거나 한도금액을 하향 조절할 필요가 있다. 위원안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그 손해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유독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서만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의원안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다수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통신업 등 소비자와 분쟁이 많은 다른 업종에서도 도입되지 않은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은 금융판매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되어 불합리하다.

건의사항

본 법안 및 시행령을 통해 특정 금융업, 즉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단일법 하에서 시행하려는 일부 제도, 즉 보장성 보험상품 등 보험업의 특성을 배제한 판매행위규제, 보험약관대출을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 보험 관련 법규에서 이미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제도가 있음에도 남용의 소지가 있는 계약해지권 등의 도입, 소비자 손해에 대한 금융회사로의 입증책임의 부당한 전환 및 무과실책임주의 등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소 제기의 금지를 폐지할 수 없다면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법률안에서 하향 조정하지 못한다면 시행령에서라도 소액분쟁사건 기준 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설정하여야 한다. 의원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입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위원회

개요

지식재산권(IPR)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조물 즉, 지식재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간이다. 지식재산권으로 잘 알려진 권리로는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표권과 제품(전체 또는 일부)이나 제품의 장식의 시각적 외관을 보호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 디자인권, 그리고 기술 혁신을 보상하는 특허권이 있다.

현재의 세계경제에서 “지식은 [.....]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며 지식재산 환경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². 유럽연합지식재산청과 유럽특허청의 연구 자료³에 따르면 지식재산은 국가의 GDP, 고용 및 무역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이 핵심 경제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며, 이에 특허청은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강하면서도 유연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한국에서의 지식재산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에 취해진 여러 가지 조치들을 환영한다.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조항을 추가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의 부정사용행위를 규제한 것 외에도 올해 6월에 신설된 국제재판부에서는 쌍방이 동의하면 영어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 정부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한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점차 감소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를 살펴보면 137 개국 중 54 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유럽의 몇몇 국가들 뿐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도 뒤쳐진 순위이다⁵. 2017년 기업환경조사(Business Confidence Survey)⁶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반영되었는데, 설문 조사 응답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한국 내 지식재산권 단속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는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의회와 한국 정부 간의 대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조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및 정치적 조치를 마련할 것⁷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와 그 규제의 모호한 해석 때문에 혁신과 지식재산권 창출에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은 다양한 종류의 기술(‘국가 핵심 기술’ 및 ‘전략적 기술 /자료’로 정의 됨)에 대한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한국에서의 지식재산 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 각 계층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혁신을 활

1. OECD (1996), The Knowledge-Based Economy.
2. OECD (2013), Supporting Investment in Knowledge Capital, Growth and Innovation.
3. European Patent Office (EPO) and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 (201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nsive industries: contribution to economic performance and employment in the European Union.
4. 특허청 (2018) 연간 보고서 2017.
5. WEF (2017),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6. ECCK (2018), Business Confidence Survey 2017.
7. EESC (2017),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8. EPO and EUIPO (201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성화하고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의 권리 집행을 지원하는 등 모든 관계자들을 돕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지식재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이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이슈들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모든 관계자들의 협력을 환영하는 바이다.

주요이슈

1. 지식재산 연구

지식재산은 혁신과 창의성을 지원함으로써 번영과 경쟁력을 높여준다. 따라서, 지식재산 창출이 활발해지도록 장려하고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해당 권리자뿐만 아니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새로운 창작이 법에 의해 확고히 보호된다면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겠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론상 또는 실질적 보호의 부재는 혁신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적합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정확한 사실과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혁신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실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⁸.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의 혜택을 수치화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유럽 연합 내에서의 지식재산의 경제 기여도, 위조품 무역량 및 위조 산업으로 인한 손해를 업종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수치들은 사회 각 계층에서 지식재산이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지식재산 환경을 육성하며 (심도있는 조사와 적극적인 기소 및 강한 처벌을 통한)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적극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피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의 간접적인 향상에 기여하였다.

건의사항

한국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 규모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수행된 연구 결과는 캠페인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학교 교과과정 에 포함시켜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다.

2.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 관한 관심 부족

여러 정부 기관들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단속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기관의 직권으로 사건이 개시되는 경우도 제한적이다.

특히 산업 디자인권의 침해나 (2017년 7월에 형사 처벌 조항이 도입된)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관련 사건들은 큰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의사항

지식재산권 단속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속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며 후임들에게 전문 지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1항에서 언급된 연구를 통한 수치들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의 영향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에 단호히 맞서는데 중점을 두며, 성공적인 지식재산권 단속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보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지식재산 관련 단속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기관에서 지식재산권 전담 부서를 설립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위조 행위가 국경없는 범죄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OECD는 "협력 강화와 국제 체제의 범위 확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⁹. 따라서 국외의 단속 기관들은 물론 기업들과도 정기적으로 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

3. 지식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효과적이지 못한 처벌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은 강력한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기본이 된다. G7의 ICT 및 산업부 장관들이 강조한 바와 같이, 위조행위,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부정 유용과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위한 강력한 단속 메커니즘을 갖추어 크고 작은 기업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지식재산 권리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¹⁰.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제 61조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적어도, 고의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 [...]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수준과 일치하고 동일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구금 및/또는 벌금을 포함”하는 형사적인 절차와 처벌을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한국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특허법은 침해 시에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경우, 실제 형량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처벌 수위는 “범죄를 적절하게 방지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체

- 11. European Commission (2018),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 12. OECD (2018), Governance Frameworks to Counter Illicit Trade.
- 13. WTO Press Release (April 2018), Strong Trade Growth in 2018 Rests on Policy Choices.
- 14. OECD (2009), Magnitude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of Tangible Products: an Update.
- 15. OECD/EUIPO (2016), Trade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Mapping the Economic Impact.
- 16. Frontier Economics (2017), The Economic Impacts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 17. 관세청 (2018), 2017 연간보고서: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 18. 관세청 통계

계적 결합¹¹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위조품의 제작, 유통 및 판매에 가담한 자들의 경우, “처벌이 가장 핵심적인 범죄 방지의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최대치의 수익률과 최저치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품의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¹²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위조 행위로 인해 실제 징역형에 처해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된다. 위조품 판매자들에게 부과되는 벌금 또한 적게는 수십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여전하다.

건의사항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 모든 담당 공무원들이 (1항에서 언급된 연구를 통한 수치들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심도있는 조사, 적극적인 기소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관련 담당자들이 위조 산업의 수익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강력한 양형 기준을 활용하여 범죄를 엄격히 예방할 수 있는 처벌을 내리고, 위조 범죄에 대한 유혹을 끊어내며, 동일범에 의한 범죄 또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4. 국경조치

세관은 위조품을 비롯한 각종 밀수품의 유입을 최전방에서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세계 무역의 확대(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2018년 세계 무역 성장률은 2017년의 강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함)¹³ 와 전 세계 무역량 중 위조품 거래량의 증가(2007년 1.95%에서¹⁴ 2013년 2.5%로 증가했으며¹⁵, 연간 9 % 성장할 것으로 계산됨¹⁶) 를 고려하면, 불법 유통되는 상품의 유입을 막는 세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국가의 세관들은 위조품 압수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 역시 올해 9월 초 3년 연속해서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¹⁷ 를 발간하였는데,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발간되었을 뿐 아니라 국문과 영문판으로도 발간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로써 대한민국 관세청이 위조품 문제가 단순히 국내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임을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위조품 척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세청의 성과를 전 세계의 소비자, 기업 및 유관 기관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관세청은 비단 수입품만이 아니라 수출되는 상품 중에서도 위조품을 적발, 압수하여 이러한 성과는 더욱 의미가 깊다. 최근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의 위조품의 소량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에서도 2014년 대비 2015년 관세청 위조품 압수 사건수가 증가한 것은 이 같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통계¹⁸에 따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 수출입 건수가 모두 증가하였고, 위조품의 세계 무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

9. OECD (2018), Governance Frameworks to Counter Illicit Trade.

10. G7 ICT and Industry Ministers' Declaration: Making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Inclusive, Open and Secure.

상되며 한국인의 위조품 구매률이 4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할 때¹⁹, 2017년 관세청 위조품 압수량이 2016년 대비 26% 감소한 것은 뜻밖의 결과다.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보고서에서는 전체 압수량 및 통관 형태별 적발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압수물 규모의 표기에 있어서는 수량, 중량, 금액의 3가지 다른 단위를 혼용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일정하지 않고 흔히 사용되지 않는 단위들의 사용으로 인해 관세청의 실제 단속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건의사항

위조품으로부터 한국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역활동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화물에 대한 적정 검수율을 유지하고 검수 담당 세관공무원의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수출입 물품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검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길러 주어야 한다.

또한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럽 위원회와 일본의 세관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기 방식으로 통일하여 (이러한 정보의 가치를 희석하는 압수물의 “총 중량”보다는) 압수물의 “총 수량”과 “총 금액”으로 명확하게 표기할 것을 권고한다

5. 세관 신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들이 국경에서 쉽게 적발될 수 있도록 많은 국가에서 세관 신고를 통해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세관 공무원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국경에서 차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 관세법 제 235조 제 1 항에서도 다양한 지식재산권(상표권 및 산업 디자인권 포함)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신고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저작권은 19,000 건, 상표권은 5,600 건, 산업 디자인권은 34 건이 세관에 신고되었다. 산업 디자인은 중요한 비즈니스 자산으로 이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세관 신고를 위해서는 상표권의 경우보다 더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종 서류의 제출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 디자인권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산업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법원의 판결이나 검찰 구형 등)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상표권 신고시에 이는 선택적 요구 사항이다.

건의사항

산업 디자인권을 침해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산업 디자인권의 세관 신고 요건을 상표권 신고 요건과 동일하게 하여 줄 것을 권고한다.

19. 2018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2018 부산 소비자 대상 위조상품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위조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6.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원자재 압수

최근 몇 년 동안, 위조품의 부속품들(원단, 금속 부품, 버튼, 지퍼, 라벨 등)이 별도의 화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속품들 중 일부는 그 자체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상표가 표기되어있는 부품이나 라벨과 같은 경우 지식재산권(주로 상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재들은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건의사항

해외에서 들여온 부속품으로 국내에서 위조품이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관에서 (완제품이든 부속품이든 상관없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원자재들을 압수할 것을 권고한다.

7. 자유무역지역(FTZ)

2018년 6월말 기준 한국은 총 1,150 개의 회사가 운영되는 13 개의 '자유무역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무역, 외국인 투자 및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통상적인 행정 규제가 완화되고 관료주의적 필요성이 최소화된다.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은 2015년 리포트²⁰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환적 지점들이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색 때문에 위조 활동의 주요 거점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지식재산청과 OECD의 연구에 따르면, “한 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의 존재, 수 및 규모는 해당 국가 경제가 수출하는 위조품 및 저작권 침해물의 가치 증가와 관련이 있다.”²¹ [자유무역지역]은 이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위조업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도구이며,²² 유럽형사경찰기구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은 계속해서 수많은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이 있기에, 특정 지역에서는 조화로운 단속 기준이 여전히 필요하다.²³

부산항을 이용하는 절반 이상의 컨테이너들이 부산항을 환적항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에 대한 검색은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더욱이 자유무역지역은 여러 정부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높다. 앞서 언급 한 유럽연합지식재산청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수와 규모를 기준으로, 2013년에 한국에서 수출된 위조품의 가액이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²⁴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악용이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닌 현실임을 보여준다.

건의사항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악용을 막기 위해 환적화물을 보다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단속의 기준을

20. Europol and OHIM (2015), 2015 Situation Report on Counterfeiting in the European Union.
21. OECD/EUIPO (2018), Trade in Counterfeit Goods and Free Trade Zones: Evidence from Recent Trends.
22. OECD/EUIPO (2018), Trade in Counterfeit Goods and Free Trade Zones: Evidence from Recent Trends.
23. Europol and EUIPO (2017), 2017 Situation Report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in the European Union.
24. OECD/EUIPO (2018), Trade in Counterfeit Goods and Free Trade Zones: Evidence from Recent Trends.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25. OECD (2018), Governance Frameworks to Counter Illicit Trade.

OECD는 자유무역지역의 악용 가능성에 비추어 몇가지 개선 사항들을 제안한 바 있다.²⁵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자유무역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개선할 것
- 자유무역지역에서 관할이 있는 정부 기관들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
-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

8.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기업 및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위조 산업을 억제하기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헌신해왔다. 이러한 취지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013년 서울시 지자체 공무원들과 기업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서울의 유명 관광지에서의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역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더불어 소비자들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 노력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서울 중구청의 위조품 전담 태스크포스 수사관들의 노력으로 2017년까지 2,000건이 넘는 단속이 이루어졌고 총 가액이 1억 2천만 유로에 이르는 약 32만여점의 위조품이 압수되었다.

이러한 단속 활동을 통해 위조품을 압수하는 것 외에도 위조품 판매를 고려하는 상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 결과, 서울의 이태원, 명동 및 남대문시장의 길거리에서 다량의 위조품을 공공연하게 판매하는 행위는 대부분 근절되었다.

시장에 따라 여러가지 요인들, 예를 들어, 운영 시간(밤 9시경 부터 새벽 5시까지)이나 상인들의 은밀한 수법 또는 순전히 시장의 규모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서울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러한 단속 의지에 (중앙정부기관이나 지자체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들의 구조적인 지원이 제한적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찰은 최근 기소에 중점을 두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인지수사를 제한적으로 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단속 기관들이 검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 활동을 늘리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위조품의 꾸준한 판매 증가를 야기하였다.

26. European Commission (2018)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27. OECD (2011), The Role of Internet Intermediaries in Advancing Public Policy Objectives.

28. ICC BASCAP (2015),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ntermediaries.

29. European Commission (2018)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건의사항

서울 지자체 공무원들이 위조품 판매를 줄이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대단히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에, 서울 이외의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검찰이 지자체로 하여금 위조품 관련 행위를 조사하고 위조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여 줄 것을 권고한다. 유럽 위원회 또한 시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²⁶도 주목할 만하다.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끌어내는 것 외에도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모든 관련 기관들이 위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 간 협력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며 따라서 지속적인 단속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러한 협력 없이는 위조품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근절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9. 온라인 매개자들의 자정 노력

최근 십여 년간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세계적으로 급증하였고 한국에서도 온라인 시장을 통한 총 거래액 또한 2007년에서 2017년까지 5배가량 증가하였다(110억 유로 이상에서 약 590억 유로). 위조 산업 또한 이 같은 추세를 따라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의심없이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법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위조 산업의 확대에 의해 다수의 지침 및 모범사례들이 소개되었다. 2011년도에 발간된 보고서²⁷에서 OECD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검색 엔진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매개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이 신고에 대한 대응을 넘어 자정 능력을 키울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제상공회의소의 위조품 및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업협의회(BASCAP)’에서도 온라인 매개자들을 위한 모범사례들을 제안하였고²⁸, 다수의 매개자들이 이를 채택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 시장의 역할 증대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최근에 개정, 시행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온라인 상에서의 위조품 유통을 근절할 수도 소비자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도 없다. 유럽 위원회 또한 각 국가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주의를 한층 더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다.²⁹

일부 온라인 매개자들은 이들의 서비스가 위조품 판매자들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매개자들마다 이러한 조치의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

건의사항

한국에서의 전자상거래 환경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온라인 매개자들의 역할을 충분히 감안한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안의 제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매개자들이 각자의 플랫폼에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도입하고 매개자들끼리 또 기업들과 대화를 늘리고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의 온라인 매개인들간의 정보 교류를 통한 통일된 정책 마련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매개자들의 서비스가 소비자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조품이 판매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한다. 다음의 세 가지 조치들은 이미 주요 선진국들의 온라인 매개자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상품의 진가품 여부에 대한 자체적 판단을 내릴 것을 요하지 않는다.

- 키워드 필터링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 키워드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효율적이고 신속한 게시 중단 절차
- 위조품 판매자의 ID와 계정 삭제

10.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증거 자료 제출

지식재산 권리자들이 검찰에서의 형사적인 절차 이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때문에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당사자들로 하여금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에서 청구자는 침해행위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고도화된 디지털 시대에 발 맞추어, 특허법은 2016년 이래로 '문서'(종이 서류를 지칭함)의 제출 대신 '자료'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청구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혐의가 제기된 침해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주요 증거는 피고의 수중에 있는 경우가 있다. 피고가 그러한 자료 제공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침해행위를 입증하거나 손해를 산정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였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건의사항

특허법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에서 '문서' 대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및 기타 지식재산권 법을 특허법과 같이 개정하여 상대방이 요청한 주요 증거 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자료를 요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11. 손해배상액 산정

한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이익,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 혹은 합리적인 통상실시료로 산정될 수 있다. 또한 배상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제반사항을 고려해 재량으로 손해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산정 방식들은 국제적 기준과 같은 선상에 있다. 한편, 독일, 일본,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주로 합리적인 통상실시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원고의 일실이익이나 피고가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익을 입증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통상실시료의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재량에 의해 배상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상표 침해 사건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액이 계산된 경우가 70%에 달하였다.³⁰

건의사항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법부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종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통상실시료를 기반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상실시료를 결정하는 데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이는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12. 법정 손해배상 제도

상표법은 법정 손해배상 조항을 두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한선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소송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힘들다.

건의사항

상표법 상의 법정 손해배상 규정이 실제 소송에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더 나아가 침해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을 높일 것을 권고한다.

30. 조영선 교수, (201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법리의 재검토 -경과실 감액을 중심으로-

주방및소형가전위원회

개요

주방·소형가전 위원회에서 다루는 제품의 범위는 식품을 담는 기구 및 용기, 소형 가전 등이다. 관련부처는 식품을 담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식품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소형가전 중 전기용품 안전인증 관련은 산업통상자원부(MOTIE) 산하 국가기술표준원(KATS), 전자파적합성 인증 관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산하 전파연구원(RRA)이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시스템인 환경성보장제(EcoAS)는 환경부(ME) 산하 한국환경공단(KECO)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통합된 법 시행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업계의 의견을 받아 해당법을 개정하여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매대행 시 위해도가 낮은 일부품목에 대해 KC마크 표기 의무가 없어졌고, 전자제품 병행수입 시 인증관련 시험 의무가 없어지면서 인증절차가 간소화되었다.¹ 이로 인해 해외직접구매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물품 종류도 다양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생활가전 시장이 커짐에 따라 수입량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한국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관세 무역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먼저, 식품용 기구, 용기의 경우 식품 접촉 재질 및 색상 별 식품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기를 이용해 작동하는 제품은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인증의 대상여부를 확인 후 인증을 거쳐 수입이 가능하다.

전자파인증(EMC)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의 전자파인증 적합, 적합등록, 잠정인증에 따라 KC마크와 인증번호를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전기와 주파수를 이용하는 제품은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블루투스²와 같이 충전하여 사용하는 제품들도 모두 해당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 운용요령에서 명시한 품목 구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분류되며 KC마크와 인증번호를 받게 된다. KC인증 제도는 국가통합인증마크로 2011년 각기 다른 부처의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마크는 통일 되었으나, 각부처의 인증접수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인증번호도 별도로 부여 받아 표기 해야 한다.

1. 상표의 국내전용사용권자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병행수입 가능. 병행수입 하려는 모델과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한 경우만 가능.

해외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통과한 제품도 한국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라고 해도 1단계(시험성적서 인정) 협정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시험성적서로 다시 국내에서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나, 시행에서의 어려움이 많아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의 활용을 포기하고 있다. 각 인증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여, 시준에 맞춰 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시험비용 및 수수료비용 또한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주요이슈

1. 가정용 저울의 검사 기준 완화

저울의 경우 현재 최대 측정 용량 1kg 이하는 수입 요건이 단순한 반면, 최대 측정 용량 1kg 초과 제품은 계량기 형식 승인 필요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특히, 전식식 지시 저울의 경우 소스 프로그램 등 제품 핵심 기술과 관련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생산업자가 정보 노출을 꺼려 한국으로의 수출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까다로운 규제 및 요청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가정용 저울은 상품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고 목적에 비해(가정용) 과도하게 정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제품만이 존재하고 있다. 한-EU간 FTA를 통해 한국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선택을 폭을 넓혀 줄 수 있다는 장점이 무의미해지는 지나친 규제라고 사료된다.

건의사항

미국, 일본, 유럽등 국가 에서는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는 계량기 형식 승인을 면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저울은 계량기 형식 승인이 면제되기를 희망한다.

2. 전자제품의 적합성 평가

전자제품의 전기안전 및 전자파의 적합성평가는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 현재,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이라고 하여 협정 체결국이 지정된 외국의 적합성 평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즉, 협정 당사자 간에 상대방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당사자 자신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 결과로 서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시험기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도로 제정 되었다. EU와는 1단계 협정으로 시험성적서만 상호 인정한다.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2-나 / 전자제품 / 제 1 조 일반규정 / 라. 중복적이고 불필요하게 부담이 되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철폐를 통하여 “단일시험”과, 실행 가능한 경우,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명시 되어있다.

(i) 전자파적합성평가의 개선

동일 제품의 전자파 시험(EMC Report)에 대해 국제규격(IEC)과 국내규격(KN)이 달라 한국형으로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만들어야 국내인증이 가능하다. 즉, 단일시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의 상호 인정한 시험소에서 한국의 테스트 방법에 맞춰 시험을 해 주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는 한국시험소에서 시험을 직접 진행하는 것과 비용과 시간면에서 오히려 불리하다.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현지의 시험소에 시험방법 등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고,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 보완 사항 등에 대한 반응이 늦어, 시점에 맞게 상품을 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유럽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은 것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 시험소에서 별도의 시험을 진행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국제표준과 다른 형태의 한국형 표준은 수입기업들에게 큰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의사항

전자파적합성 평가에 대한 관련 법규가 국제규격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 본래 규제의 목적에 맞게 시험 및 평가 절차가 재정비되기를 바란다.

(ii)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의 확대

유럽은 전기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전자파 인증 모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공급자가 제품에 대한 안전을 스스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한국은 정부주도 하에 안전을 확인 혹은 인증 받는 형태이다. 한-EU FTA 협정 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개념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현재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 제품군들에 한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적합성평가를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 도입 당시 목록에서 확대된 제품군은 소수에 불과해 점진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전자파의 적합성평가의 경우, 전기로 동작하는 모든 것은 인증 혹은 등록 대상이며, 공급자가 스스로 안전을 인증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7년 1월부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의의가 무색해졌다.

건의사항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목록의 적극적인 확대를 요청한다. 전자파의 적합성평가 목록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추가하여 점진적으로 그 목록을 확대하는 것을 요청한다.

3. 환경성보장제도의 합리적 적용

환경성보장제(EcoAS)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여,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목

적이 있다.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폐차처리지침(ELV) 등의 규정을 아우르는 제도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EU보다 과도한 자료 증빙을 요구하여 수입사로서는 제도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사전예방규정 중 제도 1: 유해물질함유기준 준수의 증빙자료 구비를 위한 방법 (해당 수출국가에서 발행한 서류나 마크)의 경우, 수출국에서 인증 받은 RoHS, WEEE 서류가 있거나, CE 마크가 있다. 하지만 수출국에서는 제품의 기본모델이 RoHS 인증을 받으면 해당 제품군의 파생모델도 함께 인증을 해 주는데, 한국에서는 파생제품의 경우도 모델별로 서류를 증빙하라고 요청한다. 유럽의 경우 자가선언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국내에서는 자가선언하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공인 검사기관의 서류만 인정한다. 또한 CE마크는 현품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되어있는 것만 인정한다. 유럽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CE마크를 라벨에 표기하거나 소형제품은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하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제도 2: 재질구조 개선지침 준수인데, 수입사는 제조자와는 달리, 수출국의 물건을 그대로 들여오는 구매자이다. 제품 자체의 재질구조 개선에 관여할 수 없는데, 내용미비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 하다.

건의사항

대표모델로 받은 RoHS 성적서가 있다면, 파생모델까지 인정해 주기를 희망한다. 혹은 파생모델의 경우 자가선언 서류도 증빙 자료로 인정 해주기를 바란다. CE마크는 최소포장단위에 있는 것까지 인정 해주기 희망한다. 재질구조평가서 작성 시 개선사항의 경우 '수입사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같을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4. 기구용기제품 식품검사 간소화

식품용 기구용기 제품 수입 시 제품의 음식 닿는 부분에 대해 재질 별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동일 제품인 경우 기존 합격 서류를 제출하는 실적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구용기의 경우 공산품과 같이 사출하여 제작하고, 신고 당시 재질 및 색상 등을 기준으로 보고되는 바, 식품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절차적 개선 및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i) 수입 최소량

식품용 기구용기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100kg) 미만으로 수입되어 정밀검사한 제품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이라도 그 후 수입 시 수입 최소량 이상인 경우 기존 정밀검사 결과가 인정되지 않고, 새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식품이 대량으로 생산 될 경우 변질되는 품질에 대한 기준을 기구용기에도 적용한 것으로 공산품과 같이 사출하여 제작하는 제품들에 대해 최소 수입량의 기준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 같은 제품

에 대해 수입량에 따른 중복 검사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수입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건의사항

기구용기는 수입 최소량(100kg)에 상관없이 최초 수입 시 받은 정밀 검사의 결과를 향후 수입시에도 검사 결과 인정을 요청한다.

(ii) 식품 공전 중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한글재질명 및 영문재질명 표기 검토 한국에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이 포함되어 있다. 식품공전의 영문 명 및 새로운 재질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업들이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 국문 표준표기와 식품공전 한글 재질명이 상이:
 - 예) Stainless => 국문 표준표기: 스테인리스, 식품공전: 스테인레스
- 2) 최근 만들어진 합성재질의 명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예) Tritan

건의사항

식품공전 중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내용이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물질이 개발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기를 희망한다. 한글재질명 표기 시 국문 표준표기와 같게 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혼란이 줄어 들기를 희망한다.

개요

해운업

발틱국제해사협회(BIMCO)가 내놓은 2018년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벌크시장은 올해도 지속적인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다. 드라이 벌크시장은 지난해 5%의 수요 성장을 보였고 선대는 3.2%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석유와 철광석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하반기에 운임이 회복되고 벌크 선주와 오퍼레이터들의 수익성이 개선됐다. 2018년 BDI 평균치는 1,214로 전년 동기 대비 4.6%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중 유조선과 제품 운반선의 운선료는 이란 제재 문제와 고유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유조선의 경우 1분기에 2008년 이후 최대 폐선량을 기록한 만큼 선복량 증가율은 금년 내 1% 내외 수준으로 둔화되어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품 운반선의 경우 유조선과 같은 수준의 폐선량은 아니지만 2분기 이후 신규 공급 속도가 느려져 금년 선복량 증가율은 2% 이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운임과 고유가로 고전하고 있는 해운업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해운시장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 컨테이너선에 대한 영향은 낮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1%가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차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간 컨테이너 무역 거래의 6%를 차지하는 엔진, 의료장비, 반도체 및 기타 제품이 영향을 받게 됐다. 미-중 간 무역분쟁은 해운업계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세계 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IMF는 최근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5.1%에서 4.8%로 0.3% 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특히 국내 해운사들은 해외 물량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한국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내 해운사업 위기를 벗어나고자 2018년 4월 5일 해운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해운 산업 매출액 51조 원 달성과 지배선대 1억40만DWT, 원양컨테이너선복 113만TEU를 확보할 방침이다. 먼저 한국 정부는 선주와 화주,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 투자에 참여하는 상생펀드를 운영한다. 해당 펀드를 통해 선박을 짓고,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다. 더불어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화물의 국적선사 운송을 확대하고 우수 선·화주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선·화주에게 통관 및 부두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에 기반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비용, 고효율 선박을 확충해 해운 경쟁력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공사를 통해 기존 금융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고선박, 선박평형수처리시설, 컨테이너 기기를 지원하며 노후선박 교체를 위한 보조금을

물류 및 운송 위원회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선사 간 협력 강화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한국해운연합(KSP)를 통한 선사간 구조조정도 뒷받침할 계획이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사들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선박 투자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운송업

2018년 4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한 977만 명을 기록했다. 여객수송은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확대, 저유가 기조로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한편 중국의 한국행 단체여행 판매 제한에 대한 지지효과로 중국 노선이 완전한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작년 동월 대비 43.9%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 동향 분석실에 따르면 항공 화물 수출액은 2017년 1,750억 달러로 총수출의 30.5%를 차지했다. 항공 화물 수출은 수출산업 고도화,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로, 항공운송 다변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무선 통신기기, 컴퓨터 등 3개 품목이 전체 항공 화물 수출의 70%를 차지하였으며 의약품과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항공 화물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화장품의 수출이 증가한 요인은 한류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이미지 개선과 품질 향상이었으며 의약품은 고부가가치화로 전체 의약품의 80% 이상이 항공으로 수출되었다. 2018년 상반기에도 국제여객 증가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항공 화물 또한 전년대비 4.2% 성장한 약 37만 톤을 기록했다. 향후 세계 경기 회복과 해외 직접 구매 증가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제품 및 특수화물의 수요가 확대되어 지속적인 항공 화물 수출 증가가 전망된다.

국제특송업

급증하는 해외 직구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관세청은 인천공항에 특송 물류센터를 신속해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직구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박을 이용해 들어오는 해외 직구 물품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천항 인근에 오는 2021년 건립을 목표로 해상특송통관장 설치를 추진한다. 중국 웨이하이 등 인천과 가까운 도시에서 물품을 구입해 카페리 선박을 이용하면 운송비가 저렴해져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 직구 이용 금액은 약 2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로 구매하는 품목은 의류가 4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보조식품' 38.9%, '가방·지갑 및 잡화' 34.8% 순이었다. 글로벌 특송업체는 전통적인 상업견본이나 상업서류를, 국내특송업체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주요품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요이슈

1. 한국정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불공정 시장 초래 우려
정부는 한진해운 청산 이후 위축된 국내 해운업을 되살리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내 선사들이 글로벌 선사들을 추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조선소와 화주들의 투자금으로 선사

들이 선박을 발주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 운영하고 노후선박 교체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공공 화물 운송에 대한 입찰 기준을 최저가 낙찰제에서 국내 발전사 다섯 군데와 선주협회 공동으로 올해 2월 마련한 종합심사 낙찰제로 전환하고, 전락물자 등의 운송은 국내선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화물 운송적취 방안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현재 컨테이너선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국적선사들에게 불필요한 선박 건조를 장려해 선박량을 늘려 오히려 해운업계에 이미 만연한 치킨게임을 악화시키고 글로벌 선사들에게 불공정한 시장을 초래해 글로벌 해운사들의 적자 우려가 있다. 더불어 발전 5사와 선주협회 공동으로 마련한 종합심사 낙찰제의 평가 기준은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건의사항

불공정 경쟁 시장 초래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줄이기 위해 국내 선사들과 글로벌 선사들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

2.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초기전략(Initial Strategy) 채택에 따른 정부의 주도적 대응체계 구성

IMO는 제72차 MEPC(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에서 온실가스 회기 간 작업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채택된 초기 전략은 회원국들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 당사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초기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신규 규제의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였는데 해당 전략은 단기, 중기, 장기의 시기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기는 2018년~2023년, 중기는 2023년~2030년, 장기는 2030년 이후로 설정되었다. 이에 IMO는 향후에도 선박 배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며 추가 조치를 포함하여 개정된 IMO 전략은 2023년 봄에 채택될 예정이다. 해운업계는 IMO의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비롯한 향후 신규 규제에 대해 경영 특성을 고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의사항

정부는 IMO의 환경규제에 대해 선박 생애 주기에 연관된 산업들의 역량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선박 배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관을 확립하고 산업계와 정부 간의 단발성이 아닌 정기적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향후로도 발생될 수 있는 IMO 규제에 대한 선제적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3.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국제적 정책 동향과 한국의 정책 개선 건의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전자상거래의 극적인 증가는 국제무역에서 여러 도전과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중소기업에 큰 기회를 주며 주요 성장 요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가운데 관세당국은 세수 확보, 명의도용, 지적재산권 보호와 사회안전보호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전에 있어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균형 잡힌 관리 정책과 지원책을 검토하고 권고하고 있다. 그 첫 예로 호주 관세당국은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국내 업체와의 공정경쟁과 세수 확보를 위해 판매자 징수 모델을 올해 7월 도입하였고, 대만 세관은 올해 횡수 제한과 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이어, 한국 세관은 불법적 명의도용과 면세 혜택을 위한 자가신고 등을 막고자 실명제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적으로 불법 사례와 위반자를 막기 위한 관세청의 정책은 지지하나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와 화주가 불법을 자행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B2C 물품의 가격이 국내 물품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하여도 가격차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목록 제도의 남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리어 긴급을 요하는 기업 물품과 상업서류의 통관에 지연이 우려된다.

건의사항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전자상거래 업체와 특송사의 제출 의무를 부가하는 제제 보다 근본적 원인을 없애기 위한 호주의 판매자 징수 모델의 검토를 건의하고자 한다. 만일 관세청의 실명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기업 물품과 상업서류에 대해서는 통관지체가 없는 방안을 검토 요청한다.

4. 목록통관기준의 금액기준 단일화

대부분의 국가는 WCO 즉시 통관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세금이 면제되는 목록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록 제도의 장점과 적절한 목록 기준은 관세당국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국 세관은 목록통관기준에 미화 150달러 이하(한미 FTA에 따라 미국 또는 푸에르토리코에선 미화 200달러)에 가격 기준뿐만 아니라 자가소비용 또는 상용 견본만 된다는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의 목록통관기준은 특송업체에 제약된 시간 내 발송자가 제공한 중량, 품명 및 수화인 성명 등 몇몇 정보만으로 신고를 구분해야 해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상용 견본의 모호한 기준은 수화인과 논쟁의 발생 소지가 있다.

건의사항

목록통관기준을 금액 기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가장 효율적인 제도는 가격 기준만의 목록통관기준이며 이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권고되는 국제협회의 취지이기도 하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61.4% 증가한 623만CGT이다. 세계 신조선 발주시장은 환경규제 강화 대응 수요, 낮은 선가, LNG 산업 확대 등이 주요 발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분기 큰 폭의 발주 증가 추세 이후 2분기에는 둔화되었으며 2018년 5월까지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1,007만CGT이다.

클락슨의 신조선가 지수는 2018년 1분기 말 127.33으로 전 분기 말 대비 2.3% 상승하여 2017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발주 시황이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중 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수주 점유율은 87.5%를 기록했다. 국가별 선박 수주량을 살펴보면 중국이 57만CGT(37척)을 수주했으며 뒤를 이어 한국이 53만CGT(18척), 일본이 6만CGT(3척)을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 누계실적은 한국이 496만CGT(115척) 40%로 중국 439만CGT(203척) 36%, 일본 148만CGT(58척) 12%에 앞서 한국이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발주시장이 유조선,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한국에 유리한 선종 비중이 높아지고 대형 조선사들이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들 3개 선종은 상반기 한국 수주의 87%를 차지한다.

하지만 STX조선해양·성동조선·대한조선 등 국내 10개 중형 조선사의 상반기 수주실적은 총 12척으로 27만 3000CGT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수주 금액은 4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5%나 급감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대형화와 고부가가치화로 중소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중형선박 발주가 줄어든 것이 실질적인 감소의 원인이다. 여기에 더불어 금융업계가 중소 조선사에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TX조선은 RG 발급 문제로 수주한 선박 4척에 대한 본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중형 조선소의 건조량은 2018년 1분기 탱커 10척에 이어 2분기에는 탱커 5척에 그쳤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8월부터 해양플랜트사업본부 해양야드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14년에 수주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더 이상 해양플랜트 일감이 없기 때문인데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대형 조선 3사 모두 해양플랜트 일감 부족으로 수주 절벽을 겪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각각 2014년과 작년에 수주한 프로젝트가 마지막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는 7월 국제 유가가 70달러대로 올해 초에 비해 오른 것은 사실이나 과거에 비하면 해양플랜트가 활성화되기 힘든 가격 수준이며 중국과 싱가포르 조선소들의 저가 입찰도 국내 조선소들이 해양플랜트 일감 수주에 애를 먹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및해양위원회

1. 국내 조선소의 불공정한 구매 계약 조건

국내 조선소의 기자재 공급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 납품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 잦은 설계변경 요구, 일방적 단가 인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계약서 요구 등이 그러하다. 이는 기자재 업체가 전자 입찰 시, 조선소에서 제시하는 구매 계약조건을 필수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기자재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해외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계약 조건들을 강요하고 있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경영정보 요구 금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인상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해 개정된 하도급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술 자료 인정범위’, ‘보복 조치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서 그간 국내 조선소들의 불공정한 계약 강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의사항

계약 체결을 위해 무리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수급할 수 있는 표준 구매 계약 조건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개정된 하도급법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조선 기자재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정책

국내 조선해양 부문의 경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조선기자재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추진이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수입 대체를 목적으로 지나치게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조선소와 공급업체 간 유착관계 형성 및 잠재적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초래하며 나아가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건의사항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자재 업체와 국내 기자재 업체의 기술 협력을 통한 국산화 전략을 추진하여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업체와의 특허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무분별한 기술복제로 잠재적인 안전사고의 가능성 또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국내 조선소 최저가 입찰제 관행

국내 조선소들의 기자재 구매 시, 최저가로 입찰하는 업체에 전체 물량 납품 물량을 몰아주는 관행에 의해 국내 기자재 업체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제조원가 이하의 입찰로 출혈 경쟁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곧 제품 품질

낙후와 R&D 투자 기피로 이어져 조선기자재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건의사항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와 해외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공정한 입찰 경쟁을 위해 최저가 입찰제에서 기술력, 품질, 사업경력 등이 반영된 업체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 주 52시간 근무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으로 조선업계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특성상, 시운전 또는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한 철야나 휴일 작업이 불가피하며 수주가 활발할 시에는 주 52시간제의 테두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조선업체들의 일감이 부족한 관계로 조선기자재 업체들에게 이와 관련해 뚜렷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당 근로시간제 적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건의사항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며, 조선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

개요

오늘날, 성숙 단계를 지난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및 인도 등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최근 폭발적 경제 성장을 이룬 개도국의 화석 연료(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NG))에 의존한 경제 성장은 유례없는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기상시스템은 명백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고 기후변화는 인간이 초래한 것이 사실인 상황에서, 현재 지구는 위기에 처해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면하려면, 세계 평균 기온은 2°C 이상 상승해선 안 된다.

이러한 가능한 모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환경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기후변화 완화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러나 OECD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준 에너지 사용, 자원 소비, 온실가스 배출, 대기 오염 및 스마트 시티 추진 등이 남긴 폐해를 없애기 위해 녹색성장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 성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그 목표가 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 발전 및 경제 성장은 에너지 고갈 및 환경 파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호하고,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 연료가 아닌 태양열, 풍력, 조력/파동/해양, 수력 및 녹색 기술과 관련된 신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천연 자원 사용과 환경 오염 최소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녹색성장 정책에 맞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정책 실행의 주체인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행동을 추진해야 한다.

주요이슈

1. 녹색에너지로의 전환

석탄 소비의 증가로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 및 석탄 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i) 국민적 지지와 참여 결여

녹색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규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국민적 지지와 참여가 없으면 정부와 산업 모두의 전략적 접근/기술적 해결책 활용이 힘들어진다.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민간 부문의 지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ii) 금융 지원 및 투자 부족

녹색에너지 전환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iii)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부족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Energy Master Plan, 2014-2035),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Energy Use Rationalization Plan, 2013-2017) 및 에너지비전3020(Energy Vision 3020)이 시행 중이지만, 정부의 명백한 판단이 요구되는 애매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iv)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실행 부서의 부재

건의사항

● 에너지 전환의 주류화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 제공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 금융 지원 제공(예: FIT(발전차액지원제도))

공공/민간 부문이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및 일반 금융 지원뿐 아니라 FIT과 같은 정부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 에너지전환기관 설립

적절한 방법과 자원으로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기 위해선, 정부 기관에서 “녹색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정의와 계획에 따라 산업계의 기술 실행이 가능해진다.

● 지역 에너지전환협력제도 설립

각 지역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기관과 함께 지역 에너지전환협력제도의 실행이 필요하다.

2. 재생에너지 비전

환경 인식 제고와 유가 급등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NRE) 관련 정책 및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자급자족,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소 및 기후변화예의 적응을 위해 NRE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는 NRE의 빠른 상업화 추진 기점인 2000년 초반에 NRE 확산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FIT 제도를 최초로 실행했다. 그러나 정부는 FIT을 10년간 실행한 후, FIT에서 총 전력 공급량 중 NRE의 비율을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RPS) 제도로 전환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정유 회사에 자사 제품에 바이오연료 혼합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실행도 추진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비 산업 분야의 자발적 NRE 확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도 지역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은 에너지 자급자족 환경 조성을 위해, NRE 산업에 존재하는 금융 지원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기술 개발의 막대한 공백으로 인해 여전히 NRE는 경제적 차원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나, 이의 미래 성장 가능성만큼은 폭발적이다. 이러한 NRE의 잠재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R&D 및 기타 활용 가능한 정책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건의사항

FIT는 FIT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 또한 FIT 제도는 많은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를 주도했으나, 이는 전력 발전에 있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통계적 수치만 높이는 것이 아닌 합리성을 지향하는 효과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만약 산업계가 처음부터 규제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산업계는 해결책을 찾고 정부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공유가치 창출(CSV)

한국은 빠른 성장을 구가하는 주요 경제국으로, 원자재 대외구매 및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자연 환경을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산업계는 사회와 환경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경제의 가치 체인 영향을 평가하고 경제 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포착하여 가치 체인의 각 면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CSR을 공유가치 창출 철학과 혼동하여 투자 규모뿐 아니라 사회 및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있다. CSV는 사회의 니즈에 부합되면서 이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건의사항

정부가 주도하는 탄탄하고 잘 합의된 CSV를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하면, 지속 가능성과 준법 이상을 추구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계는 정부의 공유가치를 더욱 잘 이해하여 공유가치에 부합되는 자신들만의 기술과 전략 추진이 가능해진다.

주요이슈

1. 일정규모 이상의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통합 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의사항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내용이 중복되는 신고내용(예: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 손익계산서 등)의 제출의무를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

2.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의 도입과 이전가격과세의 증가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case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한국 국제청에서 MAP을 담당하는 인원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사전 가격승인, 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를 포함한) MAP case들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건의사항

국세청에 MAP를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하여 한국기업 및 외투기업의 상호합의(APA 포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전가격 이슈해결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3. 최근 외투기업의 세무조사시 APA를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팀이 특별한 이유없이 APA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과세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의사항

법적으로는 APA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APA를 적극 장려해왔던 점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따라 APA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무조사시 특별한 사정(예:APA신청서상의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 없는 한 APA 신청 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를 못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4. 법인세법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에 보면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가 종속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에서는 조세조약이 우선하므로 조세조약에서 인도가 예비적, 보조적활동인 경우에는 PE에서 배제될 수 있으나, 부가세법상의 외국법인 사업장은 법인세법 94조를 그대로 참조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조세조

조세워킹그룹

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여전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판정될 수 있어,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고정사업장의 범위가 불일치하여 혼란이 야기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건의사항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5. 법인세법 제44조의 3에 따르면, 100% 국내 자회사간 합병 시, 모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합병에 대해 자동적인 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외국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 자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건의사항

내국법인과외국법인의 합병성 측면에서, 외국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 자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6.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룹내 효과적인 자금운용 정책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실무상 빈번히 발생한다. 이와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규정은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default rule과 관련하여, 국내자회사가 해외 관계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시장실세이자율보다 높은 국제청장 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국내자회사가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LIBOR 12 개월 이자율에 1천분의 15 가산금리가 정상이자율로 인정되고 있다.

건의사항

상기 default rule 규정은 삭제되거나 자금 대여시나 차입시에 대해 동일한 간주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르면,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경우 국내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만 자료제출의무가 있는 반면, 국가별보고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관련 자료가 과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건의사항

국내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회사의 납세순응비용을 줄이는 차

원에서 국가별보고서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 외국계회사로 제출의무자를 제한할 것을 건의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액만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들은 그룹 전체적인 인사규정을 바탕으로 개별 고용계약서에 따라 상여금이 결정되고 있다. 특히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단순히 한국 세법 요건 충족을 위해 본점의 정관을 개정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건의사항

외국계 회사들의 사업운영방식을 고려하여, 고용계약서에 의한 임원상여금 지급액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9.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 3에 따라,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 금액이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계산된 자본금 추산액(deemed capital)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본점 또는 해외 지점에 대한 지급이자 중 미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규제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다.

건의사항

과도한 차입거래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산입에 대한 규제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도 충분하며, 내국은행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기 규정의 폐지를 건의한다.

10.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이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바 해당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건의사항

영세율 규정 적용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여 당해 규정을 현행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건의한다.

11. 최근 부가가치세법 24조의 개정으로 전문서비스와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상호주의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영세율 적용을 위

해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에서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 부가세 면제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의사항

실무적으로, 개별 납세자가 각 국가의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전문서비스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처리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 전문서비스와 사업지원서비스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가세 처리(부가세면제 또는 영세율)를 하는 국가의 명단을 파악하여 제공하고, 납세자는 이를 근거로 영세율 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다.

부록

별첨명칭

줄임말	국문
AEBS	비상자동제동장치
APA	사전가격승인
BASCAP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기업행동연합
BDI	발틱건화물운임지수
BEPS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I	신체상의 손상
BIMCO	발트해국제해사협의회
BOD	이사회
BPR	살생물제관리법
CBI	영업비밀
CCA	화학물질 관리법
CFIA	캐나다 식품검사청
CFR	미국연방규정집
CITL	법인세법
CLP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규정
CMR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CODEX	식품규격
CPI	단체신용상해보험
CRIT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	공유가치 창출
CTA	임상시험 승인
DMFU	디메틸푸마르산염
DREC	약제급여평가위원회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EC	유럽 공동체
ECG	심전도 검사
EcoAS	환경성보장제도
EDI	전자적인 데이터 교환
EFSA	유럽식품안전청
ELV	폐차 처리 지침
EMA	유럽의약청
EMC	전자파적합성
EPA	미국환경보호국
EPI	환경성과지수
EPO	유럽특허청

줄임말	국문
ERC	배출가스관련부품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
EUR	유로 화
EV	전기자동차
FDA	미국 식품의약국
FIFRA	미연방살충·살균·살서제법
FIT	기준가격지원제도
FSC	금융위원회
FSS	금융감독원
FTA	자유무역협정
FTZ	자유무역지역
GDP	국내총생산
GHG	온실가스
GHS	세계조화시스템
GMO	유전자조작식품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BL	보험사업법
ICER	점증적 비용효과비
ICT	정보통신기술
IFOAM	국제유기농운동연맹
IMDS	자동차 산업용 재료 데이터 시스템
IMF	국제통화기금
IMO	국제해사기구
IMP	조사대상의약품
IND	임상시험용신약
IP	지식재산권
IPC	혁신형 제약기업
IPR	지식재산권
ISO	국제표준화기구
KATRI	자동차안전연구원
KATS	국가기술표준원
K-BPR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KCA	한국소비자원
KCDC	질병관리본부
KCS	관세청

줄임말	국문
KECO	한국환경공단
KFTC	공정거래위원회
KGCP	한국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KIPO	특허청
KITA	한국무역협회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KRW	한국 원화
KSP	한국해운연합
LCITA	국제조세조정예관한법률
LDWS	차로이탈경고장치
LEZ	운행제한제도
LIBOR	리보금리
MAFRA	농림축산식품부
MAP	상호합의절차
M-ATP	시장형실거래가
ME	환경부
MEPC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MIM	혼합물
MOEF	기획재정부
MOHW	보건복지부
MOLIT	국토교통부
MOTIE	산업통상자원부
MRA	상호인정협정
MRP	요양급여상환금액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SI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G	천연가스
NHIS	국민건강보험공단
NICE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
NLR	국가출하승인검정
NOP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
NRE	신재생에너지
NTS	국세청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R	목적 반응 비율

줄임말	국문
PBT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물질
PCN	독성 알림 센터
PE	의약품경제성평가
PMS	시판후 부작용감시
PTE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PVA	사용량 약가연동제
QALY	질보정수명
REACH	화학물질등록평가법
RFID	무선인식
RFS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
RG	선수금 환급보증
RMOA	위해관리추가분석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RA	전파연구원
RSA	위험분담계약제
SMO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
SPF	자외선 차단 지수
SSIM	중점관리물질
STOT	특정표적장기독성
SVHC	고위험성 물질
TA	치료 분야
THAAD	고 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RIP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UDI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UNECE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
USD	미국 달러
USDA	미국 농무부
VAT	부가가치세
VCM	판매자 징수 모델
vPvB	고 잔류성, 고 생물농축성
WCO	세계 관세 기구
WEEE	폐전기·전기제품처리지침
WTO	세계무역기구

기관

줄임말	국문
BIMCO	발트해국제해사협의회
CFIA	캐나다 식품검사청
EC	유럽 공동체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	유럽의약청
EPA	미국환경보호국
EPO	유럽특허청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
FDA	미국 식품의약국
FSC	금융위원회
FSS	금융감독원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FOAM	국제유기농운동연맹
IMF	국제통화기금
IMO	국제해사기구
ISO	국제표준화기구
KATRI	자동차안전연구원
KATS	국가기술표준원
KCA	한국소비자원
KCDC	질병관리본부
KCS	관세청
KECO	한국환경공단
KFTC	공정거래위원회
KIPO	특허청
KITA	한국무역협회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MAFRA	농림축산식품부
ME	환경부
MEPC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MOEF	기획재정부
MOHW	보건복지부
MOLIT	국토교통부

줄임말	국문
MOTIE	산업통상자원부
MSI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HIS	국민건강보험공단
NTS	국세청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RRA	전파연구원
UNECE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
USDA	미국 농무부
WCO	세계관세기구
WTO	세계무역기구

자동차 위원회 주요 이슈

승용차 위원회

1. 충돌안전기준 개정안 시행 시점
2. EV/PHEV용 구동축전지에 대한 시험 기준
3. 자동차자기인증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인정 범위
4. 한-EU FTA에 따른 UNECE 형식 승인서 인정
5.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기준
6. 배출가스, 연비, 소음측정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 시험기관 범위
7. 환경성보장제도 운영에서의 국제 표준 절차 인정
8. 배출가스관련부품의 구체화
9.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성적서 기준
10. 고객 인도 전 차량의 제작 결함 시정 및 고지 의무
11. 제작결함 시정 계획에 대한 보고 절차

상용차 위원회

12.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13. 자동차 너비 기준
14.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의무 장착 대상 차종
15. 자동차자기인증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인정 범위
16. 대형차 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

타이어 위원회

17. E-mark 부착 타이어에 대한 안전확인신고 면제 절차
18. 해외 원산지 타이어에 대한 E-Mark 인정

주류 위원회 주요 이슈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

1. 주류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
2. 주류 경품제공 내용 디지털 마케팅 허용

주류 용도구분표시제 개선

3.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가 부착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완전 폐지
4. 병맥주의 용도구분 표시제 개선

RFID 시스템 개선

5. RFID 데이터 결과 공유
6. RFID 태그 부착 장소

화학 위원회 주요 이슈

화학물질등록평가법(K-REACH)

1.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 등
2.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3.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의견
4.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5.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함량 기준

K-BPR

6. 살생물 제품의 승인 신청자료
7.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 기준: 타 국가 법에 의한 유사성 인정

Chemicals Control Act (CCA)

8.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문제점

화장품 위원회 주요 이슈

1. 화장품류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 위험물안전관리법
3.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시 광고
4. 자외선 차단제 SPF 표시 범위
5. 어린이 사용 화장품 표시사항
6.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의 지정
7. 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

패션 및 유통 위원회 주요 이슈

1. 통관 후 판매 전 안전 기준 준수
2. 직접운송 요건 관련
3. 가격표시제 규칙 관련
4. 판매 금지 조항
5. 안전/품질표시제 산성도 규제 관련

- 6. 표시사항 및 방법
- 7. 규제 변동사항 관련

식품 위원회 주요 이슈

- 1. Non-GMO 표시 가능 제품 확대
- 2. 유기가공식품 한-EU 동등성 협정 개선
- 3. 국제 식품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 4. 식품 수입검사 절차의 개선
- 5.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필요

헬스케어 위원회 주요 이슈

제약 산업

- 1. 경제성평가
- 2.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확대 적용
- 3. 위험분담제도
- 4. 환급제 부가가치세 과부담(이중부담) 이슈
- 5. 선등재, 후평가 제도의 도입
- 6. 사용량-약가연동제
- 7. 선별급여
- 8. 혁신신약 약가 우대
- 9.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
- 10. 염변경 의약품의 특허 존속 기간 연장
- 11. 투명성 강화
- 12. 혼합백신 접종비 산정방식
- 13. 백신제품의 중복시험
- 14. 제조업 허가 (위탁제조)
- 15. 조건부 승인
- 16. 초기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검토 과정 중 추가 자료 요구
- 17.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기기/전자기기/물품 등의 수입 절차 기간
- 18. 병원이 임상연구 사이트에서 일할 임상연구 지원기관 소속의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사용을 막고 있는 국내 노동법
- 19. 동물유래 시험 시약 통관을 위한 검역절차
- 20. 임상용 의약품의 관세면제

의료기기 산업

- 21. 의료기기 가치 인정

- 22. 가격인하에 수입가격의 적용
- 23.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표준코드
- 24. 공급내역 보고의 실거래가 정보

기타

- 25. 정보통신망법의 규제완화 요청

보험 위원회 주요 이슈

- 1. 한방병원 치료 및 수가 기준 제정
- 2. 한국 보험 시장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3. 신용생명보험을 구속행위 대상 상품 목록에서 제외
- 4. 교차판매 제도적 허용 및 정보공유
- 5. 법인독립대리점의 책임과 법인독립대리점의 불법행위로부터 보험회사 면책
- 6. 보험상품과 은행상품에 동일한 구속행위 기준을 적용
- 7. 특수형태근로자 관련 법률안
- 8.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법률안
-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지식재산권 위원회 주요 이슈

- 1. 지식재산 연구
- 2.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 관한 관심 부족
- 3. 지식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효과적이지 못한 처벌
- 4. 국경조치
- 5. 세관 신고
- 6.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원자재 압수
- 7. 자유무역지역(FTZ)
- 8.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
- 9. 온라인 매개자들의 자정 노력
- 10.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증거 자료 제출
- 11. 손해배상액 산정
- 12. 법정 손해배상 제도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주요 이슈

- 1. 가정용 저울의 검사 기준 완화
- 2. 전자제품의 적합성 평가

3. 환경성보장제도의 합리적 적용
4. 기구용기제품 식품검사 간소화

물류 및 운송 위원회 주요 이슈

1. 한국정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불공정 시장 초래 우려
2.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초기전략 채택에 따른 정부의 주도적 대응체계 구성
3.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국제적 정책 동향과 한국의 정책 개선 건의
4. 목록통관기준의 금액기준 단일화

조선 및 해양 위원회 주요 이슈

1. 국내 조선소의 불공정한 구매 계약 조건
2. 조선 기자재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정책
3. 국내 조선소 최저가 입찰제 관행
4. 주 52시간 근무제

그린워킹그룹 주요 이슈

1. 녹색에너지로의 전환
2. 재생에너지 비전
3. 공유가치 창출 (CVS)

조세워킹그룹 주요 이슈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의 도입과 이전가격과세의 증가
3. APA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특별한 이유 없는 세무조사
4.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고정사업장의 범위의 불일치
5. 법인세법 제44조의 3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국조법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
8.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 3
10. 부가가치세법 제24조
11. 부가가치세법 24조의 개정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유럽계 기업들의 협회입니다. ECCK는 유럽 및 한국기업과 기관들의 상호이익을 위한 공정하고 열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기간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비영리, 비정치적 기관입니다.

- ECCK는 한국 정부 및 주요기관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정부부처, 경제단체 및 언론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CCK는 유럽계 기업들의 공동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이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유럽 각 국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ECCK는 산업별 위원회 및 포럼을 통해 시장상황, 규제 및 산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럽계 기업들의 정보 교류의 중심으로서 ECCK는 백서, 비즈니스환경조사, 리포트 및 잡지와 뉴스레터 등 정기간행물을 출판하여 배포합니다.
- 회원사들은 ECCK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ECCK는 한국을 찾는 유럽 정부인사나 기업인들을 위한 연락 창구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위해선 ECCK 웹사이트 www.ecck.eu 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ecck@ecck.eu 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